

2018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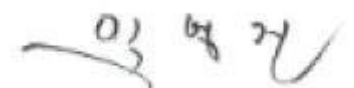
本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는

지배구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충실하게 작성되었습니다.

2019년 3월 5일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임 영 진



<목 차>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4p
2. 이사회	9p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6p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82p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110p
6.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126p
7. 감사위원회	137p
8. 위험관리위원회	156p
9.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169p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170p
2. 보수체계	179p

[첨부] 가. 관련 규정 188p

나. 선임대상 사외이사후보 검토보고서	283p
----------------------	------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당사 또는 회사')는 건전한 경영을 통해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배구조의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 다양성/전문성을 갖추는 것을 그 원칙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지배구조 투명성

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일체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회사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前 회사 및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지배구조 관련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를 투명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둘째, 정관, 이사회 규정 및 각 이사회內위원회 규정 등 지배구조 관련 일체의 내부 규정 전문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개하여 당사의 지배구조 운영 방식에 관해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셋째, 주주총회 결과,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이 있는 경우에도 회사 및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hinhancard.com(신한카드), www.crefia.or.kr(여신금융협회)

(2) 지배구조 건전성

건전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 8월에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구조법에서 이사회와 관련하여 권고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정관, 지배구조 내부규범, 이사회규정 등을 정비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3) 지배구조 안정성

안정적인 지배구조 구현을 위해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그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로 위임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내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사회내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2018년말 기준 이사회내 사외이사 비중 57%)

그리고 모든 이사회내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운영하여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활동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여 실질

적인 경영진 견제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

당사는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갖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말 기준 금융분야 2명, 경영분야 3명, 경제분야 1명, 법률분야 1명)

또한, 주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외부자문기관 등 다양한 경로의 추천을 통해 사외이사를 선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본인추천을 금지하는 등 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Clubby Boards) 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2018년말 기준)



(2) 지배구조의 특징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상설 의사결정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성과 충분한 경험을 보유한 다수의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한금융지주회사 창립의 근간인 제일동포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자가 당사 이사회에 참여하여 그룹의 창업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견제기능을 더욱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로 구성된 총 4개의 이사회내위원회가 있으며, 모든 위원회는 과반수의 사외이사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지배구조 현황(2018년말 기준)

내부기관	주요 역할	구성	의장/ 위원장	관련 규정
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전략/목표 수립 · 정관 등 중요규정 제/개정 · 예산 및 결산 승인 · 지배구조 정책,원칙 수립 · 내부통제기준 수립/평가 ·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등 	7명 (사외이사 4명)	임영진 (사내이사) *선임 사외이사 : 박평조	-정관, -이사회규정, -지배구조 내부규범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 대표이사 후보의 추천 · 감사위원 후보의 추천 ·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등 	3명 (사외이사 2명)	박평조 (사외이사)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규정

감사 위원회	· 감사계획의 수립/집행/사후조치 · 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 외부감사인의 선임/평가 등	3명 (사외이사 2명)	성재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규정
위험관리 위원회	·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변경 · 위험관리 규정의 제/개정 등	3명 (사외이사 2명)	이성한 (사외이사)	-위험관리 위원회규정
보수 위원회	· 경영진 평가 및 보상안 확정 · 성과보상체계 결정 등	3명 (사외이사 2명)	김성렬 (사외이사)	-보수위원회 규정

다. 관련 규정

- 첨부1. 정관
- 첨부2. 지배구조 내부규범
- 첨부3. 이사회 규정
- 첨부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 첨부5. 감사위원회 규정
- 첨부6.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 첨부7. 보수위원회 규정

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 이사회는 건전경영의 기반 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의 경영활동 기준/절차/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합리적 경영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필요 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당사는 이사회에의 구체적인 역할을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및 이사회규정 제13조 제1항에 정하고 있습니다.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동일내용을 이사회에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사업계획, 재무계획, 위험계획, 예산계획 등을 포함한 경영계획을 수립/평가/최종

승인하며,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경영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27일에 개최된 제6차 임시이사회에서 '2019년 경영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2019년 경영계획과 관련해서 주무부서인 전략기획팀 워크숍을 시작으로 관련부서 실무자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10~11월 유관 임·부서장 논의를 거쳐 경영계획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019년도 경영계획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확정하였으며, 2018년 12월 27일 개최된 제6차 임시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2019년도 경영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전략방향은 'Deep Focus'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5대 핵심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대 핵심전략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결제시장 패러다임 주도입니다. 관련내용으로 질적 영업으로의 체질 개선 가속화, 신판 사업 수익성 Upgrade, 新지불결제시장 주도권 강화, 체크/법인시장 시장지위 제고 등의 세부 과제가 있습니다.

둘째, 최적의 Multi-Finance 진화 전략 추진입니다. 관련내용으로 MFC에 부합하는 고객 대상 확대 및 상품 Line-up 다양화, 빅데이터 기반 금융상품·가격·마케팅 경쟁력 Upgrade, 할부금융 시장지위 Drive 가속화 등의 세부과제가 있습니다.

셋째, 차별적 고객경험 구현입니다. 관련내용으로 초개인화 마케팅(상품·서비스)을 통한 차별적 경험 제공, 신한PayFAN 기반 빠르고(결제·CS)/유익한(혜택·서비스) 디지털 고객경험 창출,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Digital Transformation, Intergrated Membership 관리 체계로의 변화방안 추진, 고객 인지·체감 가능한 마케팅/브랜드 역량 제고, 지속가능경영(ESG) 체계 확립 등의 세부과제가 있습니다.

넷째, 한계 없는 비즈니스의 확장입니다. 관련내용으로 미래성장 관점 신사업 기회 발굴 및 추진 가속화, 빅데이터 수익 모델의 확장 및 강화, Global 네트워크 질적 성장 추진 및 Glocalization 고도화, 비즈니스 라인별 수익성/성장성 고려한 전략적 리소스 배분 최적화 등의 세부과제가 있습니다.

다섯째, 최고수준의 Enabler 구축입니다. 관련내용으로 One Shinhan 가치창출 확대, Risk·신용·채권관리 역량 진화, Strategy-Driven 디지털·빅데이터·ICT 역량강화, 시대에 맞는 창의/역동적인 일하는 방식 혁신,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의 확장 등의 세부과제가 있습니다.

(나) 예산 및 결산승인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이사, 경영진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2018년 12월 27일 개최한 제6차 임시이사회에서 아래 내용과 같이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2019년 총예산은 8,145억원으로 전년 편성예산 대비 186억원 감소된 금액입니다.
세부적으로 경비예산 6,770억원, 투자/기부금예산 775억원, 예비비 600억원입니다.

당사는 예산계획과 더불어 결산안에 대한 승인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결산안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책임자가 2018년 1월 초안을 마련하여 2018년 2월 7일 개최한 제4차 임시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감사위원회를 거쳐 2018년 3월 21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아래 내용과 같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9,138억원으로 전년대비 1,97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자산은 전년대비 1.7조원 증가한 24.4조원이며 총취급액은 전년대비 8.1조 증가한 164.5조원입니다.

*** 결산에 따른 주주 배당금액, 배당성향 등은 회사 홈페이지 경영공시 게시판을 통해 매년 공시 되고 있습니다.**

(다)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해산· 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동일내용을 이사회 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3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조직· 인사· 급여에 관한 기본체계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라)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의한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동일내용을 이사회에 의한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1일 지배구조법 시행 대비 2016년 제5차 임시이사회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새롭게 제정하였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정관, 지배구조 내부규범, 이사회규정 등 관련 규정을 그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향후, 당사가 최적의 지배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의한 권한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할 계획입니다.

* 2018년도 회사 '정관' 개정 사항

1. 2018.3.21일 정기주주총회 시 : 제28조(이사의 직무) - 대표이사 외 경영진 선임절차 명시
2. 2018.11.2일 제2차 임시주주총회 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
제35조(이사회에 의한 결의방법), 제38조(감사위원회), 제41조(재무제표의 작성·비치) 개정
-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선정 역할 명시, 재무제표 세부내역 명확화 등
3. 2018.12.27일 제3차 임시주주총회 시 : 제28조(이사의 직무)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 관련
'상무 선임절차' 명시

* 2018년도 회사 주요 '조직 변경' 사항

1. 2018.7.4일 2018년 하반기 조직개편 : 미래성장 동력 확보 차원 사업라인 강화
- 마케팅전략팀 마케팅플랫폼P, 상용차금융센터, 회원인사이드P 신설 등
2. 2018.12.27일 2019년 조직개편 : 超연결, 超개인화 최적 지원, 미래 수익력 극대화,
빠른 환경 대응 통한 본원 경쟁력 제고 차원 조직개편
- 오토사업본부, 렌탈사업팀, 디지털페이먼트팀, 신사업팀, 고객분석팀 신설 등

(마)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 이해상충 행위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의한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 아목에서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를 이사회에 의한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또는 이사의 겸업승인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의한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특히 당사의 대주주인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계열사 등과의 거래를 위해서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사회가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의한 권한과 역할을 지속 보완/강화할 계획입니다.

(바) 내부통제기준 수립·평가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는 '회사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의한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내부통제 기준,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이사회에 의한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법령준수/건전경영/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의 수립/변경은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의 실제 작동결과에 대한 평가는 감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감사위원회가 최종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2018년 2월 21일 개최된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2017년 내부통제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평가결과를 감사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정성,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 평가,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평가 등 총 220개 항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최종평가는 적정(양호)한 것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준법감시인의 임원 대상 법규준수 교육 내역**

1. 2018.6.4 ~ 6.20, 그룹 공동 윤리준법 사이버교육 진행 (임원 24명 포함, 소임직원 2,919명 대상)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주식 불공정거래 방지, 금융소비자보호 등 교육)
2. 2018.6.18 오전10시~11시, 본사 23층 대회의실 (CEO, 그룹장5명, CRO, CISO, 상근감사 대상)
(자금세탁방지 현안 이슈 공유 및 내부통제 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
3. 2018.8.27 오후5시30분~5시50분, 본사 23층 임원회의실 (등기이사 7인, 경영기획그룹장 대상)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의거, 자금세탁방지 제도 이해도 제고 및 관리 강화 교육)

(사)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는 ‘회사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항’을 이사회 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13조 제1항 제6호에서 ‘위험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사회 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위험관리 정책 및 전략을 수립/변경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위험관리위원회는 매년 전사 총리스크한도 및 유형별 리스크한도를 심의/의결하고, 해당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의 리스크한도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한 리스크측

정 및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 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2018년 12월 27일 개최된 제6차 임시이사회에서 2019년 리스크한도 설정결과를 위험관리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총 리스크한도를 37,100억원으로 설정하였고, 유형별 리스크한도는 총리스크한도 범위 내에서 신용리스크 32,300억원, 금리리스크 4,500억원, 운영리스크 2,900억원, 시장리스크 100억원으로 각각 설정하였음을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아) 경영승계업무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당사의 대표이사 승계계획 등을 포함하여 그룹 전체의 경영승계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의 경영승계와 관련한 계획의 수립/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은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된 대표이사 후보는 당사 이사회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이사)

(1) 총괄

당사 이사회는 3명 이상 9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됩니다.(정관 제25조, 이사회규정 제6조)

최소 인원을 3명으로 규정한 것은 지배구조법의 최소 이사회 총원(지배구조법 제12조)을 반영한 것이며, 최대 9명으로 제한한 이유는 이사의 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커뮤니케이션 효율성 저하 등으로 의사결정 지연이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외이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정관 제25조, 이사회규정 제6조)

2018년말 당사 이사회는 모두 7명의 이사로 대표이사, 상근감사위원, 사외이사 4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외이사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연속하여 6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정관 제 26조)

이는 사내이사의 임기를 단기로 설정할 경우 책임경영이 어렵고 단기수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장기로 설정할 경우 사외이사에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2018년 3월 21일 정기주주총회에서는 4명의 사외이사가 임기 만료되었으며, 박평조,성재호, 이성한이사는 연임되고 김성렬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이사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임되고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이사의 공통된 자격요건은 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지배구조법 제5조가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추가적으로 동법 제6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적용 받습니다.

아울러,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6조에서는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으로서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배구조법 제13조(이사회 의장)에서는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사회가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를 별도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카드업이 일반 금융업에 비해 영위하는 업무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카드업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고 상근직으로서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해 이사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는 이사회 독립성 침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외이사 중 선임사외이사를 1인(박평조 사외이사) 선임하여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선임사외이사를 별도 선임한 사유는, 사외이사가 직무 수행 시 최우선으로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 또는 회사로부터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이며, 사외이사회의 운영을 통해 이사회 독립성과 회사에 대한 견제수준을 제고 시키고자 함입니다.

(2) 구성원

① 이사회 의장 임영진(대표이사)

임영진 대표이사는 2017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일(2017.3.7)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19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됩니다.

(2018.12.27일 당사 2018년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임영진 대표이사의 임기연장 후보추천이 있었으며, 2019년 3월 26일 개최되는 제3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 연장 여부

결의가 이루어 질 예정입니다. 부여되는 임기는 2019년 개최 정기주총일~2019.12.31일까지입니다.)

주요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주요 경력
From	To	
2017.3월	현재	신한카드 사장
2016. 1월	2017. 3월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2013. 1월	2016. 1월	신한은행 부행장
2011. 8월	2013. 1월	신한은행 부행장보
2010. 1월	2011. 8월	신한은행 경기동부영업본부장
2009. 2월	2010. 1월	신한은행 영업추진부장
2008. 4월	2009. 2월	신한은행 영업부장
2000. 3월	2008. 4월	신한은행 오사카 지점장
1986. 2월		신한은행 입행

임영진 대표이사는 상임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으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당사 이사회는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으며, 지배구조법을 반영하여 사외이사 중 1명을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이사 이석우(상근감사위원)

이석우 이사는 2016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일(2016.6.3일)에 김성화 이사 후임으로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19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주요 경력
From	To	
2016. 6월	현재	신한카드 상근감사위원
2014. 6월	2016. 6월	고려휴먼스 대표이사
2013. 5월	2014. 6월	금융감독원 감사실국장
2012. 5월	2013. 5월	금융감독원 총무국장
2009. 3월	2012. 5월	금융감독원 비서실장
2008. 6월	2009. 3월	금융연구원 파견(실장급)
2007. 4월	2008. 6월	금융감독원 감사실 감사1팀장
2005. 7월	2007. 4월	금융감독위원회 대전지원 민원팀장
1998. 4월	2005. 7월	금융감독위원회 혁신행정과 인사팀장
1989. 9월	1998. 3월	재무부
1984. 9월	1989. 9월	동력자원부

이석우 이사는 당사의 감사 전반을 담당하는 상근감사위원으로서 2016년 6월부터 현재까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③ 선임사외이사 박평조(사외이사)

박평조 이사는 2014년 정기주주총회일(2014.3.31)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19년 개최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주요 경력
From	To	
2009. 7월	현재	재일 한국상공회의소 고문
2006. 3월	현재	일본 미마츠기업 주식회사 사장
1997. 6월	현재	재일 대한국민단 중앙본부직선 중앙위원
1988. 5월	현재	사회복지법인 미마츠선린회 이사장

2003. 3월	2004. 3월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
2002. 4월	2004. 3월	샛포로 쓰쓰기노 비루진구협회 부회장
1999. 4월	2005. 4월	재일 대한민국민단 북해도지방본부 단장
1997. 8월	1999. 3월	신용조합 북해상은 이사장
1996. 4월	1999. 3월	재일 대한민국민단 북해도 지방본부 의장
1993. 4월	1996. 3월	재일 한국상공회의소 부회장(정책기획담당)
1992. 3월	2005. 3월	샛포로 신용금고 총대표
1990. 12월	1994. 5월	북해도 한국학원 이사장
1988. 5월	2006. 3월	주식회사 무라오카식품 대표이사 회장
1986. 4월	1992. 3월	북해도 한국 청년상공회 회장

박평조 이사는 2016년 3월부터 사외이사를 대표해 선임사외이사로서 활동 중이며, 이사회內위원회 활동으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2017.3월~), 위험관리위원회 위원(2014.3월~)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④ 이사 성재호(사외이사)

성재호 이사는 2015년 정기주주총회일(2015.3.26)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19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주요 경력
From	To	
2016. 1월	현재	세계국제법협회 한국지부 회장
2015. 1월	2015. 12월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2014. 1월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자문위원
2014. 1월	현재	법무부 변호사시험 자문위원
2012. 1월	현재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자문위원
2011. 2월	2013. 1월	성균관대학교 기획조정처 처장
2009. 3월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9. 1월	2010. 12월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2009. 1월	2009. 12월	국제법 평론회 회장
2009. 1월	2010.12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2008. 1월	2009.12월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2007. 1월	2008.12월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
2007. 1월	2009.1월	성균관대학교 입학처 처장
2005. 2월	2007. 1월	성균관대학교 학생처 처장
2005. 1월	현재	NIS 국제범죄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02. 10월	2009. 2월	성균관대학교 법과대 법학과 교수
1994. 3월	2002. 9월	성균관대학교 법과대 법학과 조교수/부교수
1993. 8월	1994. 2월	미국 Georgetown Law Center 조교수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으로는 감사위원회 위원/위원장(2015.3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2015.3월~2016.8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2016.8월~2018.3월), 보수위원회 위원(2018.3월~)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⑤ 이사 이성한(사외이사)

이성한 이사는 2016년 정기주주총회일(2016.3.23)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19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주요 경력
From	To	
2018. 3월	현재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015. 9월	2016. 8월	과테말라 KSP 정책자문단 수석고문
2014. 9월	2015. 9월	우즈베키스탄 KSP 정책자문단 수석고문
2013. 8월	2014. 9월	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010. 5월	2013. 8월	국제금융센터 원장
2009. 2월	2010. 5월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본부장
2008. 3월	2009. 2월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장
2007. 12월	2008. 3월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대외경제심의관
2006. 12월	2007. 12월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총괄기획국 국장
2004. 8월	2006. 12월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경협총괄과 과장
2001. 5월	2004. 8월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국제경제과 과장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으로는 보수위원회 위원/위원장(2016.3월~8월), 감사위원회 위원(2016.3월~2018.3월),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위원장(2018.3월~) 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⑥ 이사 김성렬(사외이사)

김성렬 이사는 2018년 정기주주총회일(2018.3.21)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19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주요 경력
From	To	
2018. 1월	현재	영남대학교 초빙교수
2016. 1월	2017. 5월	행정자치부 차관
2014.12월	2016. 1월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실장
2013. 4월	2014.12월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실장
2011. 6월	2013. 4월	경기도 행정1부지사
2010.10월	2011. 6월	행정안전부 조직실 실장
2009.11월	2010.10월	행정안전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2008.12월	2009. 11월	행정안전부 공무원노사협력관
2008. 2월	2008.12월	행정안전부 국장
2007. 3월	2008. 2월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국 국장
2004. 8월	2007. 3월	OECD 대표부 주재관

2003. 2월	2004. 8월	대통령 인사수석비서관실 행정관
2001. 5월	2003. 2월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심사과 과장
2000. 10월	2001. 5월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총괄과 과장

이사회內위원회 활동으로는 감사위원회 위원(2018.3월~), 보수위원회 위원/위원장 (2018.3월~) 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⑦ 이사 장동기(기타비상무이사)

장동기 이사는 2018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2018.1.23)에 임보혁 이사 후임으로 최초 선임 되었으며 일신상의 사유로 2018년 12월 31일 기타비상무이사직을 사임 하였습니다.

(후임으로 이병철 기타비상무이사 선임(2018.12.27, 제3차 임시주총, 임기: '19.1.1~'19.12.31)

이사의 주요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주요 경력
From	To	
2018.1월	2018.12월	신한금융지주 부사장보
2017. 3월	2018. 1월	신한금융지주 재무팀 본부장
2016. 1월	2017. 3월	신한은행 자금시장 본부장
2014. 1월	2016. 1월	신한은행 여의도 대기업금융센터장
2010.3월	2014. 1월	신한금융지주 재무팀장
1989. 9월		신한은행 입행

(3) 요약

성명	구분	직위	경력	최초 선임	임기 만료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임영진	대표 이사	이사회 의장	·신한은행 WM그룹 부행장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신한카드 대표이사	'17.3.7	'19년개최 정기주총	21개월	임원후보 추천위
박평조	사외 이사	선임 사외이사, 임추위 위원장	·북해도 한국학원 이사장 ·(주)무라오카식품 대표이사 회장 ·미마츠기업 주식회사 사장	'14.3.31	'19년개최 정기주총	57개월	임원후보 추천위 위험관리위
성재호	사외 이사	감사위 위원장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세계국제법협회 한국회장	'15.3.26	'19년개최 정기주총	45개월	감사위 보수위
이성한	사외 이사	위험관리위 위원장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16.3.23	'19년개최 정기주총	33개월	위험관리위 임원후보 추천위
김성렬	사외 이사	보수위 위원장	·OECD 대표부 주재관 ·경기도 행정1부지사 ·행정자치부 차관 ·영남대학교 초빙교수	'18.3.21	'19년개최 정기주총	9개월	보수위 감사위
장동기	기타 비상무 이사	기타 비상무 이사	·신한은행 재무기획부 팀장 ·신한은행 자금시장 본부장 ·신한금융지주 부사장보	'18.1.23	'18.12.31	11개월	위험 관리위 보수위
이석우	사내 이사	상근 감사 위원	·금융감독원 비서실장 ·금융감독원 감사실국장 ·고려휴먼스(주) 대표이사 ·신한카드 상근감사위원	'16.6.3	'19년개최 정기주총	30개월	감사위

* 2019.3.26일 정기주주총회 後 예정 된, '19년 제2차 임시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회내위원회 위원 선임 결의 시,

대표이사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서 제외 예정.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권고사항 반영)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018년에는 총 10회(정기이사회 총 4회, 임시이사회 총 6회)의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이사의 평균 참석율은 100.0%입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18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 `18.1.23 10:30~10:35 [안건통지일 `18.1.9]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임영진	김동환	박평조	성재호	이성한	임보혁	이석우	
1. 이사 성명	임영진	김동환	박평조	성재호	이성한	임보혁	이석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① 2018년 제1차 임시주주 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결안건 내용 : ① 이사선임을 위한 2018년 제1차 임시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나) 2018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 '18.1.23 10:50~10:55 [안건통지일 '18.1.9]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임영진	김동환	박평조	성재호	이성한	장동기	이석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①이사회내위원회 위원 선임 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결안건 내용 : ① 장동기 기타비상무 이사 위험관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 위원 선임

(다) 2018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 '18.1.23 11:10~11:45 [안건통지일 '18.1.9]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임영진	김동환	박평조	성재호	이성한	장동기	이석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①글로벌 소비자 금융사인수 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결안건 내용 : ① 베트남 글로벌소비자 금융사(PVFC) 인수 계약 체결 승인

(라) 2018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 : '18.2.7 13:20~14:00 [안건통지일 '18.1.24]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임영진	김동환	박평조	성재호	이성한	장동기	이석우	
1. 이사 성명	임영진	김동환	박평조	성재호	이성한	장동기	이석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 2017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특이의견 없음							
2. 2017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3. 2017년 감사결과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① 제32기 결산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결안건 내용 : ① 제32기 결산에 관한 사항

(마) 2018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 '18.2.21 15:50~17:10 [안건통지일 '18.2.7]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임영진	김동환	박평조	성재호	이성한	장동기	이석우	
1. 이사 성명	임영진	김동환	박평조	성재호	이성한	장동기	이석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 2017년 경영실적보고	특이의견 없음							
2. 2017년 하반기 계열사간 거래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3. 2017년 4분기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현황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2017년 내부통제시스템 운영평가 보고	특이의견 없음
5. 2017년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업무수행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6.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 실적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① 제3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 지배구조諸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③ 카자흐스탄 해외법인(신한파이낸스)에 대한 당사 보증한도 제공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④ 신한카드 2018-1 자산유동화 증권발행 및 관련 계약승인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결안건 내용 : ① 제32기 재무제표 승인,이사 선임,감사위원 선임,정관 일부 개정 등의 처리를 위한 제32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승인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당사 내규와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제규정 개정에 대한 승인
 ③ 신한파이낸스에 대한 지급보증(84.8억) 승인
 ④ 미화 3.5억불 선순위 채권규모의 신한카드 2018-1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 승인

(바) 2018년 제5차 임시이사회 : '18.3.21 14:30~15:10 [안건통지일 '18.3.7]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임영진	박평조	성재호	이성한	김성렬	장동기	이석우	
1. 이사 성명	임영진	박평조	성재호	이성한	김성렬	장동기	이석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2017년 내부통제 체계·운영 실태 점검 결과보고	특이의견 없음							
2.보수위원회 운영실적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①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③ 2018년 사외이사 보수 결정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④ 내부통제기준 개정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의결안건 내용 : ① 이사회 의장(임영진 대표이사) 및 선임사외이사(박평조 이사)선임에 대한 승인
 ②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이성한/박평조/장동기 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박평조/이성한/임영진 이사), 보수위원회 위원(김성렬/성재호/장동기 이사)에 대한 승인
 ③ 2018년 이사 보수한도(25억원) 內 사외이사 보수에 대한 승인
 ④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내부통제 기준 개정 승인

(사) 2018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 '18.5.24 15:15~16:15 [안건통지일 '18.5.1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임영진	박평조	성재호	이성한	김성렬	장동기	이석우	
1. 이사 성명	임영진	박평조	성재호	이성한	김성렬	장동기	이석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2018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특이의견없음							
2.미얀마 멀티파이낸스시장 진출을 위한 NBF사무소 설립보고	특이의견없음							
3.자금조달 실적 및 계획보고	특이의견없음							
4.2018년 1분기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현황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① 채권발행 일괄신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 2018년 하반기 계열사간 거래 사전 승인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결안건 내용 : ① 사채모집을 위한 채권(권면총액 3조원)발행 일괄신고서 제출에 대한 승인
 ② 2018년 하반기 계열사간 거래한도(58,179억원)에 대한 승인

(아) 2018년도 제3차 정기이사회 : `18.8.27 16:30~17:50 [안건통지일 `18.8.13]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임영진	박평조	성재호	이성한	김성렬	장동기	이석우	
1. 이사 성명	임영진	박평조	성재호	이성한	김성렬	장동기	이석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 2018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2.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내역 보고	특이의견 없음								
3. 2018년 상반기 계열사간 거래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2018년 2분기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현황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① 신한카드 2018-2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기부금 집행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③ PVFC인수관련 당사 신용공여 제공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결안건 내용 : ① 미화 4.5억불 선순위 채권규모의 신한카드 2018-2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 승인
 ②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차원 관련 재단법인에 110억 출연 승인
 ③ 인수예정인 PVFC에 대한 신용공여(원화 2,165억원)에 대한 승인

(자) 2018년도 제4차 정기이사회 : '18.11.2 08:05~09:05 [안건통지일 '18.10.19]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임영진	박평조	성재호	이성한	김성렬	장동기	이석우	
1. 이사 성명	임영진	박평조	성재호	이성한	김성렬	장동기	이석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 2018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2. 2018년 하반기 자금조달 실적 및 계획 보고	특이의견 없음							
3. 2018년 3분기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현황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① 인도네시아 해외법인 자본금 증자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관련 사규 개정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③ 2018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④ 2019년 상반기 계열사간 거래한도 승인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의결안건 내용 : ① 당사 인도네시아 해외법인에 대한 자본금(약 75억원) 증자에 대한 승인
 ②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과의 정합성 제고 차원 정관 및 당사 내부규정의 개정안 승인
 ③ 정관개정을 위한 2018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승인
 ④ 2019년 상반기 계열사간 거래한도(71,101억원)에 대한 승인

(차) 2018년도 제6차 임시이사회 : '18.12.27 09:50~11:50 [안건통지일 '18.12.13]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	----------	----

								여부
1. 이사 성명	임영진	박평조	성재호	이성한	김성렬	장동기	이석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 2019년 정기조직개편(案) 보고	특이의견 없음							
2. 경영리더 육성 제도 운영 현황보고	특이의견 없음							
3. 2019년 리스크한도설정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5. 신한카드 NewVision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① 2019년 경영계획(案) 승인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 지배구조 관련 사규개정예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③ 2018년 제3차 임시주주 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④ 경영진 임명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⑤ 채권발행 일괄신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⑥ 신한카드 2019-1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결안건 내용 : ① 2019년 경영계획 승인

② 금융감독원 권고사항에 따른 '이사/경영진 선임, 평가 및 보수' 관련 사규 일부

개정에 대한 승인

- ③ 기타 비상무 이사(이병철 이사) 선임 및 지배구조 관련 경영진 선임절차 명확화 목적의 정관개정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관련 승인
- ④ 부사장(박영배,이찬홍,정지호) 및 주요업무집행 책임자(문동권 상무,김효정 상무), 준법감시인(이병호 상무)의 임명동의
- ⑤ 사채모집을 위한 채권(권면총액 3조 5천억원)발행 일괄신고서 제출에 대한 승인
- ⑥ 원화 4천억원 선순위 채권규모의 신한카드 2019-1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 승인

라. 평가

사외이사를 제외한 이사 평가 관련 : 본 연차보고서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 2. 보수체계 참조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당사는 2016년 8월 1일 시행된 지배구조법을 반영하여 기존에 운영하였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합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2016년 8월 1일부로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내위원회로서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함으로써 주주총회에 대표이사 후보, 감사위원 후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합니다.

(1) 대표이사 후보 추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대표이사 후보에 대하여 관계법규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합니다.

(2) 감사위원 후보 추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감사위원 후보에 대하여 관계법규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합니다.

(3) 사외이사 후보 추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에 대하여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람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 추천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조에 명시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원칙 아래 관계법규 또는 내규 상 적극적

자격요건, 소극적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당사에 적합한 전문성과 식견 및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있으며, 상시적으로 사외이사 후보군을 발굴·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별(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후보군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범위 내 취득 가능한 공개정보의 모니터링을 통해 후보군의 소극적 자격요건 여부,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조에서 규율하는 바와 같이 이사회가 전문성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 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추천경로(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주주, 외부자문기관, 지원부서 등)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소극적, 적극적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검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내역을 연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당사는 매년 2월과 8월 보고 중)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나. 구성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2인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017.3.22 ~ 2018.3.21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박평조	사외이사	위원장	2017.3.22	2018.3.21
성재호	사외이사	위원	2017.3.22	2018.3.21

임영진	상임이사	위원	2017.3.22	2018.3.21
-----	------	----	-----------	-----------

<2018.3.21 이후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박평조	사외이사	위원장	2018.3.21	'19년 개최 정기주총일
임영진	상임이사	위원	2018.3.21	'19년 개최 정기주총일
이성한	사외이사	위원	2018.3.21	'19년 개최 정기주총일

다. 선임기준

(1) 후보 자격요건

(가) 대표이사 후보 자격요건

본 연차보고서 5.최고경영자 경영승계-나.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1)일반-대표이사 자격요건 참조

(나) 감사위원 후보 자격요건

감사위원은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하는 임원의 자격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법 및 시행령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동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인가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동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일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 중 1명은 지배구조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합니다.

(다) 사외이사 후보 자격요건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하는 임원의 자격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법 및 시행령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동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인가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 시정조치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동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일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가 정하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법 및 시행령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하며,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비속,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일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후보 추천 절차

(가) 대표이사 후보 추천 절차

본 연차보고서 5.최고경영자 경영승계-나.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1)일반-② 대표이사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 방법, ③경영승계절차 개시 사유 및 시기, ④최종후보자 추천절차, ⑤경영승계절차 참조

(나) 감사위원 후보 추천 절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 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과 감사위원 후보 추천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합니다.

①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②위원회는 사외이사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이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③사외이사가 재임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평가 결과 해당 사외이사의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검증된 자중에서 인선한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확정하여 추천한다.

⑤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시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⑥위원회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서에 사외이사 평가 결과 및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한다.

⑦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약력

3. 사외이사 후보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

4. 사외이사 후보자와 회사 및 자회사등,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

5. 관련법령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6.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7.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8. 그 밖에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3) 임원 업무 수행 평가 방식

(가) 대표이사 업무수행 평가 방식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는 지주회사 보수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내용을 당사 보수위원회에서 확정합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는 계량적인 평가 외에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하며, 지주회사 등 상위 조직 단위의 업무 성과와 연동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 감사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상임감사위원의 평가목표설정 및 평가는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확정합니다.

(다) 사외이사 업무수행 평가 방식

당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이사회 결의로 확정합니다.

-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 2년 이상 재임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최소 2년에 1회 이상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이사회는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를 정해야 하며, 평가기준을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아 설계하는 등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 외부 평가기관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선정하되, 당사와 최근 3년 이내에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합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018년에 총 4회 개최 되었으며, 부의된 결의안건 7개 모두가 결정되었습니다.

(2) 회의개최 내역

(가) 2018년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8.2.21 15:00~15:15 [안건통지일 '18.2.7]

항목	이사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박평조	성재호	임영진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 안건	(보고안건 없음)			
4. 의결 안건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박평조 사외이사 후보 추천)	-	찬성	찬성	가결
(이성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김성렬 사외이사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성재호 사외이사/감사위원 추천)	찬성	-	찬성	가결
3. 감사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이석우 감사위원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김성렬 감사위원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	----	----	----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본인의 후보 추천 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불가

* 사외이사 후보군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주주, 외부자문기관(한국상장사협의회 사외이사 인력뱅크, 커리어케어社 등), 현직 사외이사 등의 추천을 통해 선정함.

(전문분야별 / 추천경로별 후보 현황).

1. 보고일자 : 2018년 2월 21일 제1차 정기이사회

분 야	후보군 수(명)	백분율(%)	비 고
금 융	5	20	
경 영	4	16	
경 제	3	12	
법 률	5	20	
회 계	4	16	
소비자 보호	2	8	
정보 기술	2	8	
합 계	25	100	

추천경로	후보군 수(명)	백분율(%)	비 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9	36	
주주	2	8	
외부 자문기관	12	48	
현직 사외이사	2	8	

합 계	25	100	
-----	----	-----	--

2. 보고일자 : 2018년 8월 27일 제3차 정기이사회

분 야	후보군 수(명)	백분율(%)	비 고
금 용	10	16	
경 영	12	19	
경 제	10	16	
법 률	12	19	
회 계	6	10	
소비자 보호	5	8	
정보 기술	8	13	
합 계	63	100	

추천경로	후보군 수(명)	백분율(%)	비 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9	14	
주주	3	5	
외부 자문기관	48	76	
현직 사외이사	3	5	
합 계	63	100	

(나) 2018년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8.3.21 15:20~15:30 [안건통지일 '18.3.7]

항목	이사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박평조	이성한	임영진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 안건	(보고안건 없음)			
4. 의결 안건				
1.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	찬성	찬성	가결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본인의 후보 추천 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불가

(다) 2018년도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8.8.27 16:00~16:10 [안건통지일 '18.8.13]

항목	이사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박평조	이성한	임영진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 안건	(보고안건 없음)			
4. 의결 안건				
1.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18년도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8.12.27 09:30~09:40 [안건통지일 '18.12.13]

항목	이사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박평조	이성한	임영진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 안건	(보고안건 없음)			
4. 의결 안건				
1. 대표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	가결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본인의 후보 추천 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불가

(3) 평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8조(이사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에 의거 연1회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이사회내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2016년 12월 29일 개최한 제8차 임시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의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2018년 1~2월 평가를 진행 및 종료하였으며, 현재 위원회 운영 지원 시 해당 결과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가) 평가목적 : 위원회 운영 지원 시 참고자료 활용

(나) 평가주체 : 위원 전원에게 의한 평가

(다) 평가기준

1) 운영평가 : 회의시간의 적정성, 안건의 적정성, 개최빈도의 적정성, 회사의 충분한 정보제공 여부

2) 역할평가 :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상 명시된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한 업무 수행 적정성 평가

(라) 평가방법(절차) : 5점 척도 설문 평가, 평가공정성 및 평가자 익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업체를 통한 평가 실시

(마) 평가결과

1) 본인평가(30%) : 평균 4.83점 (5점 만점)

2) 사외이사간(60%) : 평균 4.94점 (5점 만점)

3) 직원(10%) : 평균 4.71점 (5점 만점)

* 2018년도 사외이사,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세부평가결과는 105~106page 참조.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 사항

(1) 대표이사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

- ① 성명 : 임영진
- ② 출생연도 : 1960년
- ③ 출신학교 : 수성고등학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④ 경력
 - 2009. 2 신한은행 영업추진부장
 - 2010. 1 경기동부영업본부 본부장
 - 2011. 8 신한은행 부행장보
 - 2013. 1 신한은행 부행장
 - 2016. 1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 2017. 3 신한카드 사장 (現)

(나) 후보 제안자

-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 해당 사항 없음

② 후보자와의 관계 : 해당 사항 없음

*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와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다) 후보자 추천 사유

임영진 후보자는 30여년 이상 그룹 재직경험을 바탕으로 신한외의 창업정신과 가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WM, 시너지, 경영지원 등을 담당하며 업무에 대한 경험과 통찰력을 축적하였습니다.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와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영진 후보자가 6년여 기간 동안 은행 및 지주회사 임원 경력을 통해 조직관리 역량을 쌓았으며,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어 비전 공유, 공익성 및 건전 경영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으로서는 합리적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바탕으로 '그룹 통합 리워드 프로그램' 추진 등 One Shinhan 관점의 그룹 시너지 제고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자로 평가하였습니다.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후보로 판단하여 법률요건 등을 검증하고 신한카드 사장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지배구조법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과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 및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0조에 따른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2017년 3월 7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임영진 사장에 대해 관계법규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임기 2년의 당사 대표이사 사장으로 추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 감사위원 후보

(2-1) 감사위원 후보 김성렬

본 추천은 「지배구조법」 부칙 제13조(감사위원 및 상근감사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 및 법률 제19조의 요건(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에 적합하도록 감사위원을 선임하고자 진행한 사항임.

(가) 후보자 인적사항

① 성명 : 김성렬

② 출생연도 : 1958년

③ 출신학교

- 경북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④ 주요경력

- 2003. 2 대통령 인사수석비서관실 행정관
- 2004. 8 OECD 대표부 주재관
- 2007. 3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국 국장
- 2008. 2 행정안전부 국장
- 2008. 12 행정안전부 공무원노사협력관

- 2009. 11 행정안전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 2010. 10 행정안전부 조직실 실장
- 2011. 6 경기도 행정1부지사
- 2013. 4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실장
- 2014. 12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실장
- 2016. 1 ~ 2017. 5 행정자치부 차관
- 2018.1~현재 영남대학교 초빙교수

*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및 기타 겸직사항 : 사외이사 경력 없음,
 겸직사항 - 영남대학교 초빙교수(비상근) (2018.1~현재)
 ※ 그 외 타사 겸직사항 및 변동사항 없음.

(나) 후보제안자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김성렬 이사를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한 제안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인 박평조 사외이사입니다. 박평조 이사 인적사항은 2.이사회-나.구성(이사)-(2)구성원-③참조.

② 후보자와의 관계

사외이사로 선임된 김성렬 사외이사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인 박평조 사외이사는 업무 외 개인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사유

① 후보자 추천사유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김성렬 이사는 경기도 행정1부지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실장, 행정자치부 차관 등 정부기관에서 주요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 개선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로 추천되었습니다.

② 후보자 추천 경로

김성렬 사외이사는 행정자치부 등 정부기관에서의 주요 업무 경험 등을 근거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평가 : 결격사유에 해당사항 없음.

② 금융회사가 정한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당사는 감사위원회규정,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 등을 통해 관련 법규에 의한 자격 요건 충족은 물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자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

무적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렬 감사위원 후보는 경영진과 독립되어 있고, 경기도 행정1부지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실장, 행정자치부 차관 등 행정 경험이 풍부한 경영전문가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감사위원 후보자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의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2월에 지배구조내부규
범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외이사는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등의 적
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㉞ 전문성

김성렬 감사위원 후보자는 경기도 행정1부지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실장,
행정자치부 차관 등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경영 분야 전문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㉟ 직무공정성

김성렬 감사위원 후보자는 당사와 거래관계는 없습니다.

㊱ 윤리성, 책임성

김성렬 후보자는 그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 등의 의안을 충실히 검토하고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함과 동시에,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

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㉔ 충실성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참석 및 의안의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연간 50~60시간이 소요되는데, 후보자는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본인 소명

관계법령상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공공기관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신한카드 사외이사 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별첨. 사외이사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참조.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김성렬 이사는 경기도 행정1부지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실장, 행정자치부 차관 등 공직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 개선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함으로써, 회사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위해 2018년 2월 21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김성렬 이사에 대해 관계법규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감사위원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로 결의되며 해당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2) 감사위원 후보 성재호

본 추천은 「지배구조법」 부칙 제13조(감사위원 및 상근감사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 및 법률 제19조의 요건(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분리선임)에 적합하도록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선임하고자 진행한 사임임.

(가) 후보자 인적사항

① 성명 : 성재호

② 출생연도 : 1960년

③ 출신학교

- 청구 고등학교

- 성균관대학교 법학 학/석/박사

④ 경력

- 1993. 8 미국 Georgetown Law Center 조교수

- 1994. 3 성균관대학교 법과대 법학과 조교수

- 1997. 10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現)

- 2005. 2 성균관대학교 학생처 처장

- 2007. 2 성균관대학교 입학처 처장

- 2008. 8 국제법평론회 회장

- 2009. 1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 2011. 1 성균관대학교 기획조정처 처장
- 2015. 1 제42대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 2016. 1 세계국제법협회 한국회장

***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및 기타 겸직사항 : 삼성미소금융재단**

사외이사(2016.3~2019.3(퇴임 예정))

※ 그 외 타사 겸직사항 및 변동사항 없음.

(나) 후보제안자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성재호 이사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한 제안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인 박평조 이사입니다. 박평조 이사 인적사항은 2.이사회-나.구성(이사)-(2)구성원-③참조.

② 후보자와의 관계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로 선임된 성재호 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인 박평조 사외이사와 업무 외 개인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사유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성재호 이사는 성균관대학교 학생처/입학처/기획조정처

처장,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 외교부/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국제법평론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등 학계/행정계 및 국제법 분야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이슈 등에 적절한 조언이 가능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1 : 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관련법령 2 : 지배구조법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평가 : 결격사유에 해당사항 없음.

②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통해 관련 법규에 의한 자격 요건 충족은 물론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재호 감사위원 후보는 경영진과 독립되어 있고,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 외교부/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국제법평론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등 학계/행정계 및 국제법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성재호 후보자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의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8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사외이사는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등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㉓ 전문성

성재호 감사위원 후보자는 성균관대 교수, 외교부/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국제법평론회, 국제경제법학회,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법률 분야 전문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㉔ 직무공정성

성재호 감사위원 후보자는 당사와 거래관계는 없습니다. 후보자는 2014년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부터 투명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㉕ 윤리성, 책임성

성재호 후보자는 성균관대 법학대학 교수로서 이사회 등의 의안을 충실히 검토하고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㉖ 충실성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참석 및 의안의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연간 약 50~60시간이 소요되는데, 후보자는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본인 소명

관계법령상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법조계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신한카드 감사위원 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별첨. 사외이사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참조(2018년 2월 21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성재호 성균관대학교 학생처/입학처/기획조정처 처장,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 외교부/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국제법평론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등 학계/행정계 및 국제법 분야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이슈 등에 적절한 조언을 통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 2월 21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성재호 사외이사에 대해 관계법규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감사위원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로 결의되며 해당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2명의 찬성(후보자 본인 후보추천 사항은 의결권 제한)으로 가결되었습니다.

(3) 사외이사 후보

(3-1) 경영/경제분야

(3-1-1) 사외이사 후보 김성렬

본 추천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항임.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① 성명 : 김성렬

② 출생연도 : 1958년

③ 출신학교

- 경북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④ 주요경력

- 2003. 2 대통령 인사수석비서관실 행정관
- 2004. 8 OECD 대표부 주재관
- 2007. 3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국 국장
- 2008. 2 행정안전부 국장
- 2008. 12 행정안전부 공무원노사협력관
- 2009. 11 행정안전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 2010. 10 행정안전부 조직실 실장
- 2011. 6 경기도 행정1부지사
- 2013. 4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실장
- 2014. 12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실장

- 2016. 1 ~ 2017. 5 행정자치부 차관

*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및 기타 겸직사항 : 사외이사 경력 없음,

겸직사항 - 영남대학교 초빙교수(비상근) (2018.1~현재)

※ 그 외 타사 겸직사항 및 변동사항 없음.

⑤ 사외이사 경력

- 없음

(나) 후보제안자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김성렬 사외이사를 후보로 추천한 제안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인 박평조 이사입니다.

박평조 이사 인적사항은 2.이사회-나.구성(이사)-(2)구성원-③참조.

② 후보자와의 관계

사외이사로 선임된 김성렬 이사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인 박평조 이사는 업무 외 개인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이유

① 후보자 추천이유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된 김성렬 이사는 경기도 행정1부지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실장, 행정자치부 차관 등 정부기관에서 주요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감사위원으로서 향후 당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추천하였습니다.

② 후보자 추천 경로

김성렬 사외이사는 행정자치부 등 정부기관에서의 주요 업무 경험 등을 근거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②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③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3, 제50조의4
- 평가 : 법령상 위반사항 없음

③ 금융회사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통해 관련 법규에 의한 자격 요건 충족은 물론 금융, 경제, 경영, 법률, 문화/예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사외이사로 추천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인물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김성렬 후보는 해당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의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2월에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외이사는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등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 전문성

김성렬 사외이사 후보자는 경기도 행정1부지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실장, 행정자치부 차관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영 분야 전문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직무공정성

김성렬 사외이사 후보자는 당사와 거래관계는 없습니다.

㉔ 윤리성, 책임성

김성렬 후보자는 오랜 공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 등의 의안을 충실히 검토하고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할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㉕ 충실성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참석 및 의안의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연간 약 50~60시간이 소요되는데, 후보자는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선임 후 타 회사 겸업 관련 변동사항 없음.

④ 본인 소명

관계법령상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정부기관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신한카드 사외이사 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바)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별첨. 사외이사후보자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참조

(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18년 2월 21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실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2/3의 동의로 결의되며 해당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3-1-2) 사외이사 후보 박평조

본 추천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항임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① 성명 : 박평조

② 출생연도 : 1943년

③ 출신학교

- 와세다대학 이공학부 건축학과 졸업

④ 경력

- 1992. 3. 샤프로 신용금고 총대표

- 1997. 6. 제일 대한국민단 중앙본부직선 중앙위원

- 1997. 8. 신용조합 북해상은 이사장

- 2002. 4. 샤프로 쓰쓰기노 비루진구협회 부회장

- 2006. 3. 일본 미마츠기업 주식회사 사장

- 2009. 7. 제일 한국상공회의소 고문

- *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및 기타 겸직사항 :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03.2~'04.3),
겸직사항 - 미마츠기업 대표이사 사장(상근) ('06.3~현재)
- ※ 그 외 타사 겸직사항 및 변동사항 없음.

⑤ 사외이사 경력

- 근무기간 : 2014년3월31일~현재
 - 회사명 : 신한카드 주식회사
 - 주요실적(2018년 기준) : 제32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경영진 평가/보상체계, 지배구조 관련 주요규정 제·개정, '19년 경영계획 승인 등
 - 이사회 참석횟수 : 10회 중 10회 참석 (참석률 100%)
 - 이사회내위원회 참석수 : 위험관리위원회 7회 중 7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4회 중 4회 (참석률 100%)
- * 2018년도 박평조 사외이사, 사외이사 활동 평가결과는 105page 참조.

(나)후보제안자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박평조 사외이사를 후보로 추천한 제안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인 이성한 이사입니다.
이성한 이사 인적사항은 2.이사회-나.구성(이사)-(2)구성원-⑥참조.

② 후보자와의 관계

사외이사로 선임된 박평조 사외이사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인 이성환 이사는 업무 외 개인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라) 후보자 추천이유

①후보자 추천이유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박평조 이사는 일본 삿포로 신용금고 총대표, 북해도 한국학원 이사장, 재일 한국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재일동포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력과 (주)무라오카 식품, 미마츠기업등의 성공적인 회사 경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신한카드 경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③ 후보자 추천 경로

박평조 사외이사는 성공적인 회사경영 전문성, 재일동포 사회 리더로서의 경력 등을 근거로 대표이사가 추천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마) 금융회사등과 관계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②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③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바)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3, 제50조의4
- 평가 : 법령상 위반사항 없음

② 금융회사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통해 관련 법규에 의한 자격 요건 충족은 물론 금융, 경제, 경영, 법률, 문화/예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사외이사로 추천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인물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박평조 후보는 해당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의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2월에 지배구조내부규

법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외이사는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등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㉞ 전문성

박평조 사외이사 후보자는 일본 북해도 한국학원 이사장, (주)무라오카식품 대표이사 회장을 역임하는 등 재일동포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성공적인 회사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영분야 전문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㉟ 직무공정성

박평조 사외이사 후보자는 당사와 거래관계는 없습니다. 후보자는 2014년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부터 투명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㊱ 윤리성, 책임성

박평조 후보자는 일본 미마쓰기업 사장으로서 이사회 등의 의안을 충실히 검토하고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㊲ 충실성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참석 및 의안의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연간 50~60시간이 소요되는데, 후보자는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선임 후 타 회사 겸업 관련 변동사항 없음.

④ 본인 소명

관계법령상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금융회사 CEO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이며,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신한카드 사외이사 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별첨. 사외이사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참조

(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18년 2월 21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실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로 결의되며 해당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2명의 찬성(후보자 본인 후보추천 사항은 의결권 제한)으로 가결되었습니다.

(3-1-3) 사외이사 후보 이성환

본 추천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항임.

(가) 후보자 인적사항

① 성명 : 이성한

② 출생연도 : 1957년

③ 출신학교

- 성동고등학교
-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 일리노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중앙대학교 국제학 박사

④ 경력

- 2001. 5.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국제경제과 과장
- 2004. 8.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경협총괄과 과장
- 2006. 12.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총괄기획국 국장
- 2008. 1.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개발전략심의관
- 2008. 3.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장
- 2009. 2.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본부장
- 2013. 5. 국제금융센터 원장
- 2018. 1.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現)

*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및 기타 겸직사항 : 서울보증보험 사외이사('14.5~'17.5),

겸직사항 -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비상근) ('18.1~현재)

※ 그 외 타사 겸직사항 및 변동사항 없음.

⑤ 사외이사 경력

- 근무기간 : 2016년3월23일~현재
 - 회사명 : 신한카드 주식회사
 - 주요실적(2018년 기준) : 제32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19년 감사 계획, 지배구조 관련 주요규정 제· 개정, '18년 경영계획 승인 등
 - 이사회 참석횟수 : 10회 중 10회 참석 (참석률 100%)
 - 이사회내위원회 참석수 : 감사위원회 4회 중 4회, 위험관리위원회 5회 중 5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회 중 3회, 보수위원회 1회 중 1회(참석률 100%)
- * 2018년도 이성환 사외이사, 사외이사 활동 평가결과는 105page 참조.

(나) 후보제안자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이성환 사외이사를 후보로 추천한 제안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인 박평조 이사입니다.
박평조 이사 인적사항은 2.이사회-나.구성(이사)-(2)구성원-③참조.

② 후보자와의 관계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성환 사외이사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인 박평조 이사는 업무 외 개인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이유

①후보자 추천이유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이성환 이사는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국제경제과 과장,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장 및 FTA 국내대책본부 본부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등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신한카드 경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②후보자 추천 경로

이성환 사외이사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센터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 등을 근거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②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③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①소극적 요건

-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3, 제50조의4
- 평가 : 법령상 위반사항 없음

②금융회사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통해 관련 법규에 의한 자격 요건 충족은 물론 금융, 경제, 경영, 법률, 문화/예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사외이사로 추천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인물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성한 후보는 해당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의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2월에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외이사는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등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㉞ 전문성

이성한 사외이사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 본부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금융/경제 분야 전문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

습니다.

㉠ 직무공정성

이성한 사외이사 후보자는 당사와 거래관계는 없습니다. 후보자는 2016년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부터 투명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윤리성, 책임성

이성한 후보자는 그 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 등의 의안을 충실히 검토하고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충실성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참석 및 의안의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연간 50~60시간이 소요되는데, 후보자는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선임 후 타 회사 겸업 관련 변동사항 없음.

④ 본인 소명

관계법령상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공공기관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신한카드 사외이사 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바)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별첨. 사외이사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참조.

(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18년 2월 21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실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로 결의되며 해당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2명의 찬성(후보자 본인 후보추천 사항은 의결권 제한)으로 가결되었습니다.

(3-2) 법률 분야

(3-2-1) 사외이사 후보 성재호

본 추천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항임.

(가) 후보자 인적사항

① 성명 : 성재호

② 출생연도 : 1960년

③ 출신학교

- 청구 고등학교
- 성균관대학교 법학 학/석/박사

④ 경력

- 1993. 8 미국 Georgetown Law Center 조교수
- 1994. 3 성균관대학교 법과대 법학과 조교수
- 1997. 10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現)
- 2005. 2 성균관대학교 학생처 처장
- 2007. 2 성균관대학교 입학처 처장
- 2008. 8 국제법평론회 회장
- 2009. 1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 2011. 1 성균관대학교 기획조정처 처장
- 2015. 1 제42대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 2016. 1 세계국제법협회 한국회장

-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 : 삼성미소금융재단 사외이사(2016.3~2019.3)

*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및 기타 겸직사항 : 삼성미소금융재단 사외이사('16.3~'19.3)

겸직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근) ('97.10~현재)

※ 그 외 타사 겸직사항 및 변동사항 없음.

⑤ 사외이사 경력

- 근무기간 : 2015년3월26일~현재
 - 회사명 : 신한카드 주식회사
 - 주요실적(2018년 기준) : 제32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19년 감사계획, 지배구조 관련 주요규정 제·개정, '18년 경영계획 승인 등
 - 이사회 참석횟수 : 10회 중 10회 참석 (참석률 100%)
 - 이사회내위원회 참석수 : 감사위원회 9회 중 9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회 중 1회, 보수위원회 1회 중 1회 (참석률 100%)
- * 2018년도 성재호 사외이사, 사외이사 활동 평가결과는 105page 참조.

(나) 후보제안자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성재호 이사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한 제안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인 박평조 이사입니다. 박평조 이사 인적사항은 2.이사회-나.구성(이사)-(2)구성원-③참조.

② 후보자와의 관계

사외이사로 선임된 성재호 이사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인 박평조 사외이사는 업무 외 개인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사유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성재호 이사는 성균관대학교 학생처/입학처/기획조정처 처장,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 외교부/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국제법평론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등 학계/행정계 및 국제법 분야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신한카드 경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1 : 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관련법령 2 : 지배구조법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평가 : 결격사유에 해당사항 없음.

②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통해 관련 법규에 의한 자격 요건 충족은 물론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성재호 후보는 해당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성재호 후보자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의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8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사외이사는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등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㉞ 전문성

성재호 사외이사 후보자는 성균관대 교수, 외교부/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국제법평론회, 국제경제법학회,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법률 분야 전문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㉟ 직무공정성

성재호 사외이사 후보자는 당사와 거래관계는 없습니다. 후보자는 2014년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부터 투명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㊱ 윤리성, 책임성

성재호 후보자는 성균관대 법학대학 교수로서 이사회 등의 의안을 충실히 검토하고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㊲ 충실성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참석 및 의안의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연간 약 50~60시간이 소요되는데, 후보자는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선임 후 타 회사 겸업 관련 변동사항 없음.

④ 본인 소명

관계법령상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법조계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신한카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별첨. 사외이사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참조.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18년 2월 21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실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로 결의되며 해당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가.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 사외이사 김동환

(가) 소극적 자격요건

김동환 이사는 신한카드의 사외이사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김동환 이사는 전북은행 사외이사,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의 자문위원 경험과 금융업 관련 오랜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신한카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환 이사는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현재 역임하며 경제, 금융 영역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당사 사외이사로 재직하여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사외이사 재직 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흔들림 없는 소신을 바탕으로 신한카드의 주요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이사회 및 위원회 참가율 100%로 높은 충실성을 유지하는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중 상근직으로 근무 중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97년~현재) 외 별도 타사 겸직사항이 추가 되지 않아 당사 사외이사로서 충실하게 시간 할애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 요약

심사 항목	충족 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여전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	○	결격사유 없음
나. 모범규준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	○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	금융분야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	이해상충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	다년간의 금융분야 연구실적 및 다양한 자문위원 활동
라. 충실성	○	이사회 전회 출석

(2) 사외이사 박평조

(가) 소극적 자격요건

박평조 이사는 신한카드의 사외이사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박평조 이사는 제일동포 기업가로서 성공적인 기업경영, 샷포로 신용금고 대표, 제일 한국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의 경험과 일본 카드시장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신한카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평조 이사는 일본 미마츠기업 CEO로 현재 역임하며 경영 영역에서 탁월한 전문성과 윤리성

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당사 사외이사로 재직하여 주주와 금융소비자, 윤리경영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선임 사외이사로 직무 수행시에 객관적이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신한카드의 주요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해외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및 위원회 참가율 100%로 높은 충실성을 유지하는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중 상근직으로 근무 중인 미마츠기업 대표이사직('88년~현재) 외 별도 타사 겸직사항이 추가 되지 않아 당사 사외이사로서 충실하게 시간 할애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 요약

심사 항목	충족 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여전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	○	결격사유 없음
나. 모범규준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	○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	기업경영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	이해상충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	성공적인 기업경영, 재일동포 사회내 리더 역할 수행
라. 충실성	○	해외(일본) 거주 불구, 이사회 적극 참여

(3) 사외이사 성재호

(가) 소극적 자격요건

성재호 이사는 신한카드의 사외이사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성재호 이사는 국제법평론회/한국국제경제법학회/대한국제법학회 회장을 역임 하는 등 국제법 분야 전문가로서 신한카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재호 이사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교수를 역임하며 국내외 법률 영역에서 탁월한 전문성과 식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당사 사외이사로 재직하여 주주와 금융소비자, 준법 경영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사외이사로 직무 수행시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신한카드의 주요 의사결정, 특히 법률적 부분과 글로벌 관련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이사회 및 위원회 참가율 100%로 높은 충실성을 유지하는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중 상근직으로 근무 중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97년~현재) 외 별도 타사 겸직사항이 추가 되지 않아 당사 사외이사로써 충실하게 시간 할애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다) 요약

심사 항목	충족	충족 이유
-------	----	-------

	여부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여전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	○	결격사유 없음
나. 모범규준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	○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	법률분야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	이해상충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	다년간의 국제법분야 연구실적 및 다양한 연구/대외 활동
라. 충실성	○	이사회 전회 출석

(4) 사외이사 이성환

(가) 소극적 자격요건

이성환 이사는 신한카드의 사외이사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이성환 이사는 재정경제부, 기획재정 부 등에서의 오랜 기간의 공직 경력 및 국제금융센터 원장, 우즈베키스탄/과테말라 정책자문 단 수석고문 등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재경, 금융 분야의 전문가로서 신한카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환 이사는 당사 사외이사로 재직하여 주주와 금융소비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전략, 글로벌, 자금 등 경영, 경제와 관련된 신한카드의 주요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이사회 및 위원회 참가율 100%로 높은 충실성을 유지하는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3월부터 시작 한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비상근직)' 외 별도 타사 겸직사항이 추가 되지 않아 당사 사외이사로서 충실하게 시간 할애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다) 요약

심사 항목	총족 여부	총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여전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	○	결격사유 없음
나. 모범규준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	○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	금융분야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	이해상충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	다년간의 재정분야 공직 경력 및 다양한 고문 활동
라. 충실성	○	이사회 전회 출석

(5) 사외이사 김성렬

(가) 소극적 자격요건

김성렬 이사는 신한카드의 사외이사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김성렬 이사는 중앙인사위원회, 대통령 인사수석비서관 실, OECD대표부, 경기도 행정1부, 행정안전부 등에서의 오랜 기간의 공직 경력 및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으로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한카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렬 이사는 당사 사외이사로 재직하여 주주와 금융소비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경영전반, 인사, 사회적 책임 경영 등 경영분야 전문가로서 신한카드의 주요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이사회 및 위원회 참가율 100%로 높은 충실성을 유지하는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시작 한 '영남대학교 초빙교수(비상근직)' 외 별도 타사 겸직사항이 추가되지 않아 당사 사외이사로서 충실하게 시간 할애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다) 요약

심사 항목	충족 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여전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	○	결격사유 없음
나. 모범규준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	○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	경영분야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	이해상충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	다년간의 재정분야 공직 경력

		및 다양한 고문 활동
라.충실성	○	이사회 전회 출석

나. 사외이사 활동내역 및 보수

(1) 사외이사 김동환

(가) 활동내역

김동환 이사는 '18년 중 개최된 이사회 5회 중 5회(1월 1일~3월 21일)에 참석하였고, 위험관리위원회 2회(1월 1일~3월 21일), 보수위원회 1회(1월 1일~3월 21일)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18.1.23일 이사회에서 글로벌 소비자금융 사 인수와 관련하여 NPL(무 수익여신) 규모가 2015년 이후 점차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업계 내 경쟁사들과 비교 시 높은 수준이 아닌지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인수회사를 통하여 현지에서 신용카드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18.2.7일 이사회에서는 32기 결산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2017년도는 대손 총당금 모형 변경, 비자 주식 매각 등 비경상이익 효과로 당기순이익 규모가 일시적으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60%대의 높은 배당성향의 배당액을 책정한 것은 중장기적인 회사 경영 관점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하고, 지주회사의 신한카드에 대한 배당 정책 방향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신한카드 ROE(자기자본이익률) 수준이 경쟁사 대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언급하고, 자본시장의 불안정성 등을 고려해 자기자본을 조금 더 확보해

두는 것에 대해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습니다.

김동환 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18년 중 총 19.4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나) 보수

항 목	금액(원)	산출 내역
가.보수총액	14,658,065	
기본급	7,935,484	월기본급 300만원 ('18.1~ 3.21)
상여금	-	
기타 수당	5,400,000	회의수당 및 참석수당
	1,322,581	위험관리위원회(1.1~3.21)위원장 月수당 50만 * 3회(3월 일할 계산)
나.보수 이외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 편익제공	-	

(2) 사외이사 박평조

(가) 활동내역

박평조 이사는 '18년 중 개최된 이사회 10회 중 10회에 참석하였고, 위험관리위원회 7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4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18.2.21일 이사회에서 글로벌 사업 확대와 관련하여 당시 진행중인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등 출신 선수들의 후원을 진행한다면 현지 법인의 PR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18.5.24일 이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벌 총수 일가의 갑질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의 기업문화가 선진화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향후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경영 감시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고 언급하고, 신한금융그룹의 경우 재벌계 회사가 아니라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객관화 된 외부의견 전달 등 이사회 순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18.8.27일 이사회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기부금 집행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장기소액연체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자금이 아닌 금융회사들의 기부를 통한 재단 설립방식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고, 특히, 120만명에 이르는 대규모 연체금 탕감을 진행할 경우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18.11.2일 이사회에서 글로벌 경기 불안정 등으로 2019년은 아주 힘든 해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회사 경영의 근간이 되는 회사의 체질 개선, 조직문화 강화 측면에서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18.12.27일 이사회에서 지배구조 관련 사규 개정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안건자료에 명시된, 금융감독원의 자회사 인사자율권 확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질의하였습니다.

박평조 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18년 중 총 53.8시간을 할

애하였습니다.

(나) 보수

항 목	금액(원)	산출 내역
가.보수총액	58,000,000	
기본금	36,000,000	월기본금 300만원 (18.1~12월)
상여금	-	
기타 수당	16,000,000	회의수당 및 참석수당
	6,000,000	선임사외이사(1~12월)/ 임추족(1~12월)위원장 月수당 50만 * 12회
나.보수 이외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 편익제공	-	

(3) 사외이사 성재호

(가) 활동내역

성재호 이사는 '18년 중 개최된 이사회 10회 중 10회에 참석하였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회(1월 1일 ~ 3월 21일), 보수위원회 1회(3월 21일 ~ 12월 31일), 감사위원회 9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18.2.21일 이사회에서 지배구조 諸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선임과 관련해서 규정 신규대조표에 언급된, '자회사경영관리 위원회 추천이 아닌'의 문구가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인지 질의하고 법규정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형태가 아닌 만큼 삭제 또는 다른 표현으로 변경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업무수행 실적보고와 관련해서 고객 신용정보 관리는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를 중심으로 만전을 기해 업무에 임해달라고 제언하였습니다.

'18.3.21일 이사회에서 보수위원회운영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2018년 경영진 평가기준 中 시장 지위 개선도를 평가사항에 추가한 것과 관련해서 당사 경영에 끼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18.5.24일 이사회에서 2018년 하반기 계열사간 거래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17년 상반기에 비해 '18년 상반기 한도금액이 1조원 가량 증가 하였으나, '18년 상반기에도 최근 추세 수준의 한도 소진율이 예상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18.11.2일 이사회에서 인도네시아 해외법인 자본금 증자와 관련하여 글로벌 진출이 신한카드에 있어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언급하고, 글로벌 경제 상황을 지속 관찰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특히, 본사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현지 상황에 관심을 갖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관련 사규 개정과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 포함 되어 있는 외부감사인 사후 평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 질 예정인지 질의하였습니다. 한편, 3분기 경영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수익원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영업수익 항목 중 기타수익의 성장률이 타 영역대비 높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고, 지속적인 신상품 개발 및 젊은 세대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전략 마련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거시경제 전망 및 경영계획 수립방향 공유와 관련해서 조직의 성장에 있어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자부심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고, 직원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경영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18. 12. 27일 이사회에서 2019년 경영계획(안) 승인과 관련하여 재무계획-취급액 목표 부분에서 개인신용판매 취급액 규모를 전년대비 6.6% 신장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는데, 내년 경영환경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감안 시, 다소 과도한 목표 수준이 아닌지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유동화 거래 관련 위임 사항에서 언급 된, 각종 계약서 및 거래 관련 계약서 등의 용어가 명확하게 정의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2019년 정기 조직개편(안) 보고와 관련하여 최근 젊은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보면 오토사업이나 렌탈사업 같은 신사업들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수입차금융팀을 신설하는 등 2019년의 조직개편은 시의 적절해 보인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경영리더 육성제도 운영 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소수의 경영리더 육성책은 의미 있는 제도로 판단 되지만, 경영리더군으로 선발되지 않은 많은 수의 직원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며,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육성 및 조직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밸런스 있게 잘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성재호 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18년 중 총 55.8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나) 보수

항 목	금액(원)	산출 내역
가.보수총액	52,700,000	
기본금	36,000,000	월기본금 300만원 ('18.1~12월)
상여금	-	
기타 수당	10,700,000	회의수당 및 참석수당
	6,000,000	감사추 위원장(1~12월) 月수당 50만 * 12회
나.보수 이외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 편익제공	-	

(4) 사외이사 이성한

(가) 활동내역

이성한 이사는 '18년 중 개최된 이사회 10회 중 10회에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4회(1월 1일 ~3월 21일), 보수위원회 1회(1월 1일 ~ 3월 21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회(3월 21일~12월 31일), 위험관리위원회 5회(3월 21일 ~12월 31일)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18.1.23일 이사회에서 글로벌 소비자금융사 인수에 관하여 계약 주요 내용 중 방카슈랑스 부분에 언급된 'Prudential 보험 상품 독점 판매' 조건과 관련해서 당사가 특정 보험 상품만을

취급할 수 있는 불리한 조건임에도 표현 방식 때문에 혜택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문구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하였습니다.

'18.2.7일 이사회에서 총당금 모형 변경, 보유주식 매각 등이 당기순이익 규모를 키우는 결과를 보인 것은 고배당을 위한 사전 준비 때문이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18.2.21일 이사회에서 카자흐스탄 법인의 NPL(무수익여신) 비율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유동화 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주관사 선정시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회사를 찾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 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2017년 경영실적 보고에서는 최근 실질회원수, 경상당기순이익, 취급액 규모 등 영업지표에서 당사와 경쟁사의 Gap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서, 올해부터는 더욱 치밀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하였습니다.

'18.5.24일 이사회에서 마케팅비용 집행 규모와 취급액, 시장점유율 추이의 연관 관계를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시의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또한, 미얀마 멀티파이낸스 시장 진출을 위한 NBFI설립 보고와 관련하여 해외 사무소 설립 등 자본 출자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자금조달 실적 및 계획 보고와 관련해서는 금리인상을 고려한 先조달 자금규모가 과도한 경우, 자금운영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過유동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18.8.27일 이사회에서 전체 자금조달 중 해외 ABS(자산담보부채권)를 통한 조달 비중을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기부금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의미에서 기부를 실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안건 내용에 기부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언급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고 발언하였습니다.

'18.11.2일 이사회에서 인도네시아 해외법인 자본금 증자와 관련해서 증자후 시장상황을 단순히 지켜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신용카드업의 구조조정 案, 대규모 증자 필요 여부 등을 포함한 중장기 관점의 사업 중간검토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

언하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경기, 글로벌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시나리오를 구축해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18.12.27일 2019년 경영계획(案) 승인에 관한 사항에서는 이사회에서는 총량 지표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지만, 팀별로 경기 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경기상황에 따라 특정 팀은 비교적 쉽게 목표 수준을 달성할 수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이성한 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18년 중 총 57.1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나) 보수

항 목	금액(원)	산출 내역
가.보수총액	53,200,000	
기본급	36,000,000	월기본급 300만원 ('18.1~12월)
상여금	-	
기타 수당	11,200,000	회의수당 및 참석수당
	6,000,000	보수위원회 위원장(1~3월),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3~12월) 月수당 50만 * 12회
나.보수 이외 기타 편익	2,195,360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2,195,360	배우자 포함 건강검진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 편익제공	-	

(5) 사외이사 김성렬

(가) 활동내역

김성렬 이사는 '18년 중 개최된 이사회 5회 중 5회에 참석(3월 21일~12월 31일)하였고, 감사위원회 5회(3월 21일 ~12월 31일), 보수위원회 1회(3월 21일 ~ 12월 31일)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18.5.24일 이사회에서 1분기 경영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좋은 경영 성과를 보인 것에 대해서 격려의 뜻을 전하고, 회원 규모에서의 경쟁사 추격 심화 및 신규모집 규모에 근접하는 이탈 회원 수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某 연구소가 발표한 카드사 브랜드평판지수에서 특정월의 당사 순위가 크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는 않으나,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정보인 만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하였습니다.

'18.11.2일 이사회에서 인도네시아 해외법인 자본금 증자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경제, 시장 상황에 따라 당사 현지법인의 경영환경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하고, 금번 증자를 통해 현지 사업이 조속히 안정화, 효율화 되었으면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한편, 감사위원회 등 감사업무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만큼 사규개정 등의 제도화 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영진

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3분기 경영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할부 금융 영역의 취급액/자산 성장률은 타 카드사들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지 질의하였습니다.

'18.12.27일 이사회에서 가맹점수수료 인하 등 카드업 전반의 시장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2019년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언급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치밀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합리적 수준의 목표조정 역시 필요한 경우 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한편, 경영계획안, 회사의 비전 수립 등과 관련해서 전 임직원 모두가 함께 인식하고 성과로 반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그를 위해 성과, 평가, 감사, 홍보, 시장/직원의 피드백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경영리더 육성제도 운영 현황 보고와 관련해서 위기상황이 되면 인력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사례가 빈번하나 신한금융그룹의 중장기적인 경쟁력 차원에서 인력에 대한 투자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며, 인사 경쟁력 제고는 단기간에 달성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긴 호흡을 갖고 지속적인 피드백 관리를 통해 성공 모델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역량 모델을 구축하고, 교육/전보/승진 등이 일관되게 관리 되어야 하며, 해당 진척사항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가질 것인 바, 향후 추가 보고를 바란다고 첨언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보고와 관련해서는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을 받은 신한카드의 노고를 치하하며, 회사의 우수 성과에 대해서 대내외에 많은 홍보를 해주기 바란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김성렬 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18년 중 총 33.9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나) 보수

항 목	금액(원)	산출 내역
가.보수총액	38,241,935	
기본금	28,064,516	월기본급 300만원 ('18.1~12월)
상여금	-	
기타 수당	5,500,000	회의수당 및 참석수당
	4,677,419	보수추 위원장(3.21~12.31) 月수당 50만 * 9회 (3.21~12.31)
나.보수 이외 기타 편익	1,500,000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1,500,000	배우자 포함 건강검진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 편익제공	-	

(5) 요약

구분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활동 시간 (Hour)
			감사 위원회		위험 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 추천 위원회		
사외 이사명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실적
김동환	5	5	-	-	2	2	1	1	-	-	19.4
박평조	10	10	-	-	7	7	-	-	4	4	53.8

성재호	10	10	9	9	-	-	1	1	1	1	55.8
이성한	10	10	4	4	5	5	1	1	3	3	57.1
김성렬	5	5	5	5	-	-	1	1	-	-	33.9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사외이사 성명	김동환	박평조	성재호	이성한	김성렬
최초선임일자	'13.3.27 (*18.3.21퇴임)	'14.3.31	'15.3.26	'16.3.23	'18.3.21
1. 교육연수 실시 내역					
가.자금세탁방지 제도 관련 교육 (회사 '리스크관리' 위한 준법교육) (2018.8.27, 30분)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나.2019년 거시경제 전망 (회사의 익년 경영 '전략' 수립을 위한 제반 경영환경 분석 교육) (2018.11.2, 30분)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다.신한카드 New Vision - 2023년까지의 중기 전략 (회사의 중기 '전략' 방향에 대한 교육) (2018.12.27, 60분)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 누적교육 시간	-	2	2	2	2

라. 기부금 등 지원내역

사외 이사	기부 받은 비영리법인 등		기부한 금융회사 등	지원 내역	
	법인등의	사외이사와		선임 전	선임 후

	명칭	관계			
김동환	-	-	-	無	無
박평조	-	-	-	無	無
성재호	-	-	-	無	無
이성한	-	-	-	無	無
김성렬	-	-	-	無	無

마. 임원책임배상보험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보상하는 손해

(가) 임원의 배상책임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

임원의 부당행위(Wrongful Act)로 주주나 제3자(종업원, 소비자, 경쟁업체 등)가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함으로서 해당 임원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보상.

부당행위(Wrongful Act)란, 임원으로서의 의무위반, 태만, 과실, 누락, 허위진술,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진술을 행하였거나 또는 행하였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임원으로서 배상청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함 (담보범위는 약관 및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임원에 대한 회사의 보상(Company Reimbursement) :

상기 배상청구에 대하여 법률이나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의 배상책임을 회사가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회사의 손해를 보상

(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 임원의 의도적인 사기행위, 의무해태 또는 고의적인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나) 대주주 및 지배주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다)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함으로 취한 이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라) 부정직행위로서 고의적인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마) 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바) 불법으로 사적인 이익 또는 혜택을 획득한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아)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자) 전문직업 수행으로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3) 보험기간 : 2018.4.1 ~ 2019.3.31

(4) 보상한도 : 그룹 총 보상한도 500억원 (청구당/그룹사별)

(5) 담보지역 : 북미지역 포함 전세계

“특약 사항 : 피보험회사 중 신한카드, 신한금융지주회사,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의 사외이사일 경우 자기부담액을 최대 1억원 범위내에서 배상책임액의 20%로 한다.”

바. 사외이사 및 이사회/이사회내위원회 평가

(1) 평가 개요

당사는 사외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최대 6년간의 재임을 허용하고 있으며, 재선임을 위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경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외이사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의(임원후보추천/보수/위험관리/감사 위원회) 운영 및 역할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에서 결의한 평가방법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 평가 개요

① 평가 주체

사외이사 평가는 익년도 1월에 사외이사 본인, 상호간 및 이사회/이사회내위원회 운영 부서장(전략기획/인사/리스크관리/감사팀장)에 의한 평가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이사 전원 및 소속 위원 전원에 의해 진행 되고 있습니다.

② 평가 기준

사외이사 평가는 사외이사별로 전문성(이사로서의 경험과 지식 등), 직무공정성(공정한 직무수

행 정도 등), 윤리책임성(윤리의식과 책임성 등), 충실성(충분한 시간과 노력의 할애 등)에 대해 5등급 절대평가로 실시 되고 있습니다.

③ 평가 절차

사외이사, 이사회/이사회내위원회 평가는 우편을 통한 설문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④ 평가의 객관성 제고 장치

당사 이사회는 평가주체·기준·방법 등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의 전 과정을 외부업체에 위탁을 통하여 사외이사, 이사회/이사회내위원회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① 평가 결과

2018년도 신한카드 사외이사 및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평가 결과 모든 사외이사가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등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역시 운영 및 역할 면에서 매우 우수하게 관리 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평가결과 세부 내용>

(사외이사 활동내역 평가 - 문항별 5점 만점)

1. 박평조 이사 : 전문성(4.72점), 직무공정성(4.63점), 윤리책임성(4.67점), 충실성(5점)
2. 성재호 이사 : 전문성(4.97점), 직무공정성(5점), 윤리책임성(4.88점), 충실성(5점)
3. 이성한 이사 : 전문성(4.97점), 직무공정성(4.93점), 윤리책임성(5점), 충실성(5점)
4. 김성렬 이사 : 전문성(4.90점), 직무공정성(4.98점), 윤리책임성(4.99점), 충실성(5점)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운영 평가 - 5점 만점)

구 분	운영 평가				역할 평가 (주요업무 총실 수행 여부)	총점 (등급)
	개최 빈도 적정성	회의 시간 적정성	안전 범위/깊이 적정성	회사로부터 적기 정보수령 여부		
이사회	4.86	4.71	4.86	4.86	4.86	4.83 (5등급)
감사 위원회	5.00	4.67	5.00	5.00	4.67	4.87 (5등급)
보수 위원회	4.33	4.33	4.33	4.33	4.33	4.33 (4등급)
위험관리 위원회	4.67	4.33	4.33	4.67	4.67	4.53 (5등급)
임원후보 추천 위원회	5.00	5.00	5.00	5.00	5.00	5.00 (5등급)

※ 평가 등급 : 5등급(4.5~5.0)-매우 우수 / 4등급(3.5~4.5)-우수 / 3등급(2.5~3.5)-보통
/ 2등급(1.5~2.5)-부진 / 1등급(0~1.5)-매우 부진

(평가 근거)

해당 평가는 2019.1.14일 ~ 1.25일 서울매니지먼트社를 통해 우편을 통한 서면평가 방식으로 진행 되었으며, 사외이사 평가는 본인(30%)/사외이사間(60%)/직원(10%) 평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직원평가에는 이사회 및 이사회內위원회 소관 부서장(전략기획 / 감사 / 인사 / 리스크관리 팀장)이 참여 했습니다.

이사회, 이사회內위원회 평가는 이사 전원(이사회) 및 소속 위원(이사회內위원회)에 의한 평가로 진행 되었습니다.

② 개선 방안

- 개선 방안 : 향후에도 사외이사 및 이사회, 이사회內위원회의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예정입니다.

아.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 금융회사로부터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 박평조 선임사외이사 ('18.3.21일 이사회 선임, 임기:'18.3.21~'19년 개최 정기주총일)

- 이사회 및 이사회內위원회 안건이 개최일 2주전에 사외이사진들에게 통보 될 수 있도록 관리/지도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 지원부서 : 전략기획팀
- 조직구성 : 기획본부장 겸 부서장(총괄) 1명, 부서원 13명('18.12.31 기준)
- 지원내역 :

- ① 이사회 등의 회의 소집 및 진행 등을 위한 실무지원
- ② 이사회 등의 의사록 등 회의내용의 기록 및 관리
- ③ 이사회 등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 ④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실무 지원 및 제반 업무 등
- ⑤ 신규 선임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교육 실시
- ⑥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및 사외이사 평가업무 지원
- ⑦ 기타 이사회 등의 지시사항 처리

자.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성명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 위	경력
김동환	2013.3.27	2018.3.21	60개월	감사위 ('13.3월~'16.3월) 보수위 ('15.3월~'16.3월, '17.3월~'18.3월) 위험관리위('16.3월~'18.3월) 임추위 ('16.3월~17.3월)	감사위원장 ('15.3월~'16.3월) 위험관리위원장('16.3월~'18.3월)	한국금융 연구원 선임연구 위원
박평조	2014.3.31	2019년 개최 정기주총일	57개월	위험관리위 ('14.3월~현재) 보상위 ('15.3월~'17.3월) 임추위 ('17.3월~현재)	보수위원장 ('15.3월~'17.3월) 임추위원장 ('17.3월~현재)	일본 미마츠기업 사장

성재호	2015.3.26	2019년 개최 정기주총일	45개월	감사위 ('15.3월~ 현재), 임추위 ('15.3월~ '18.3 월) 보수위('18.3월~ 현재)	감사위원장 ('16.3월~현재)	성균관대 교수
이성한	2016.3.23	2019년 개최 정기주총일	33개월	감사위 ('16.3월 ~ '18.3월) 보수위 ('16.3월~ '18.3월) 위험관리위('18.3 월~현재) 임추위('18.3월~ 현재)	보수위원장 ('17.3월~ '18.3 월) 위험관리위원장 ('18.3월~현재)	자본시장 연구원 초빙연구 위원
김성렬	2018.3.21	2019년 개최 정기주총일	9개월	감사위('18.3월~ 현재) 보수위('18.3월~ 현재)	보수위원장 ('18.3월~현재)	영남대학교 초빙교수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 최고경영자(대표이사) 경영승계 내부규정

당사는 신한금융그룹의 자회사로서, 신한금융그룹은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계획 운영 등 그룹내 자회사 지배구조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4년 5월 10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2014년 12월 24일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상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대표이사 경영승계 과정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 2월 24일 지주회사 이사회에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의 주요 내용은 자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종료 사유와 시기,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관리방법, 비상승계계획, 자회사의 경영진 후보 인선 기준 및 심의 관련 사항 등입니다.

<붙임>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2004. 5. 10 제정, 2016.8.1 개정)

<붙임>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2004. 5. 10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회사의 이사인 경영진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② 회사의 이사인 경영진을 제외한 위원은 자회사 경영관리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당해 자회사 경영지원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의 이사 아닌 경영진 및 제5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의 감사팀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결의 및 심의사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자회사의 대표이사 후보군 탐색 시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②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5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자회사 대표이사의 자질 등 자격요건의 설정

2.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3.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선정 및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
4. 자회사 대표이사 이외의 경영진 후보의 인선기준에 관한 사항
5. 자회사 대표이사 이외의 경영진 후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자회사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 등 조치요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을 제외한 자회사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자회사의 경영진 후보의 인선기준에 관한 사항
2. 자회사의 경영진 후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자회사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 등 조치요구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대표이사 회장은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 제1호·제4호, 제2항 제1호의 사항에 대해 정정할 수 있다.

제6조(자회사 경영승계계획)

① 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이 제안한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자회사의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 이상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선정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 회장은 위원회에서 수립된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에 따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의 평가 및 개발활동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선정 기준
2.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3.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4.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 프로세스

제7조(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 및 검증)

① 위원회는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임기만료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하되, 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대표이사 유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경영승계 계획 상의 가속승계 절차를 따른다.

④ 회사는 해당 자회사로 하여금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자회사 대표이사 대행자 및 운영계획, 자회사 대표이사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자회사의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로 하여금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1.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절차 개요
2. 자회사 경영관리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6.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8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관계인 출석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 및 자회사의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적용범위) 제6조 및 제7조는 자회사 중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다.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안정적 경영승계를 통해 경영 연속성 확보와 자회사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 2011년 자회사 CEO 승계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을 상시 관리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의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지주회사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후보군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자회사 대표이사 임기만료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하되, 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합니다. 당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된 대표이사 후보에 대하여 관계법규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하며, 추천된 대표이사 후보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됩니다.

① 대표이사 자격 요건

대표이사는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소극적 요건을 기술하고 있는 지배구조법 제5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 규정에서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동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인가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동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일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 및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0조에 의하면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대표이사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 방법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후보군 선정 및 자격요건

총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1회 이상 지주회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③ 경영승계절차 개시 사유 및 시기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임기만료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하되, 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임기만료 1개월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④ 최종후보자 추천절차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격요건, 법률요건 등을 고려하여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승계시점 자회사 CEO로서 요구되는 전략적 역할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을 심의합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관계법규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합니다.

⑤ 경영승계절차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에 따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를 위원회 결의로 추천하고,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함으로써 경영승계 절차가 종료됩니다

⑥ 후보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회사 대표이사 육성 후보군을 선정하여 미래의 자회사 CEO 후보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에 대한 통찰력, 전사관점 의사결정, 전략실행/추진력, 리더십, 대내외 영향력 등 다양한 요소의 개발 프로그램을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육성 후보군의 경영성과 및 개발활동의 결과를 정기적으로 심의, 평가하고, 자회사 대표이사를 추천함에 있어 후보군 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비상계획

자회사 대표이사가 불의의 사고, 갑작스러운 건강상 이유 등으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경영승계 계획상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가속승계 프로세스를 통해 자회사 대표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규정에 따라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대표이사 대행자 및 회사 운영계획, 자회사 대표이사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는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경영승계 절차가 종료됩니다.

다.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1) 대표이사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지주회사는 당사의 대표이사 임기만료에 따라 2017년 3월 6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법규상 결격요건, 자격요건 및 업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임영진 사장을 당사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추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3월 7일 당사 2017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 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27일 당사 2018년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로서 후보추천(임기연장) 되었습니다.

(2) 대표이사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결과

일 자	운영 현황	비 고
2017.3.6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결의	'17년 제2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7.3.7	대표이사 후보추천 및 선임 결의	'17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대표이사 후보추천 '17년 제2차 임시이사회 - 주총 소집 '17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 대표이사 선임
2018.12.21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결의	'18년 제6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8.12.27	대표이사 후보추천 (임기연장)	'18년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대표이사 후보추천

* 2019.3.26일 개최 예정인, 2018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임기연장) 예정.

(임기 : 2019.3.26 ~ 2019.12.31)

라.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관련 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임원의 자격요건)

- 평가 및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임기연장) 사유

당사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소극적 요건을 기술하고 있는 법령은 지배구조법 제5조이며 관련 규정에서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동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인가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 시정조치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동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일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임영진 사장을 2018년 12월 당사의 대표이사 사장 후보로 추천(임기연장)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는 자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으로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평가 및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임기연장) 사유

임영진 후보자는 30여년 이상 그룹 재직경험을 바탕으로 신한의 창업정신과 가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WM, 시너지, 경영지원 등을 담당하며 업무에 대한 경험과 통찰력을 축적하였습니다.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와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영진 후보자가 6년여 기간 동안 은행 및 지주회사 임원 경력을 통해 조직관리 역량을 쌓았으며,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어 비전 공유, 공익성 및 건전 경영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으로서는 합리적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바탕으로 '그룹 통합 리워드 프로그램' 추진 등 One Shinhan 관점의 그룹 시너지 제고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자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3월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 부임 이후, Deep DREAM카드 300만매 발급, 신한PayFAN회원 1천만명 돌파, 베트남 소비자금융사 인수, 카드사 최초 기업혁신대상 대통령상 / 대한민국 브랜드대상 대통령상 / 소비자중심경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경영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통을 통한 리더십 역량과 합리적 판단 능력이 우수하여, 빅데이터,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 대응과 그룹 내 시너지 성과 창출 등 주요 과제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 대표이사 사장으로서 금융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후보라 평가 하였습니다.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후보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1) 대표이사 후보군 관련 지침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에 따라 후보자 선정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1회 이상 지주회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군 선발 및 구성, 후보군에 대한 평가 및 자격검증, 후보군 및 최종 후보자 추천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 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안정적 경영승계를 통한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확립하고자 자회사 대표이사 육성 후보군을 선정하여 미래의 자회사 CEO 후보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18일 개최된 제4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총 16명의 육성 후보군을 선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후보군 육성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에 따라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후보군 관리와 관련된 실무지원은 지주회사 인사팀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육성후보군별 경영성과, 개발활동에 대하여 심의 및 평가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후보군 현황

구분	후보군 수	추천 경로
내부	16명	2017년 5월 18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육성후보군 선정
내부	19명	2018년 5월 17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육성후보군 선정

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점검 내역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에 따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 이상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지주회사는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은 팀장과 팀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승계 계획 운영 등 경영리더 육성 및 관리, 경영진 성과 보상 및 평가, 그룹 인사정책 방향 수립 및 실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8조에 따라 상시적인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 및 평가 검증,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그 밖에 대표이사 경영승계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에 따라 인사팀은 동 위원회가 경영승계 계획 적정성과 대표이사 후보자 선발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1회 이사회에 보고하는 실무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현황>

- 부서명 : 인사팀
- 직원수 : 총 6명
- 운영 내역

일자	운영내역	비고
2018.2.21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1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8.3.6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2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8.3.22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3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8.5.17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 및 평가,	제4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개발계획(안) 심의 관련 실무 지원	
2018.8.16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및 보고 실무 지원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개발계획안 심의 실무 지원	제5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8.12.21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6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6.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가. 권한과 책임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한 신한금융지주회사는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자회사 대표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이사인 경영진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사외이사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의 자격요건 등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후보군을 구성하며, 후보군의 관리와 검증을 하고, 최종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및 추천 결의 등 단계별로 대표이사 후보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참고로 신한카드의 대표이사 자격요건으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과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이 있으며,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 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구성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2018년 3월 22일에 대표이사 회장과 4명의 사외이사를

위원으로 선임하여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동일 개최된 제3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단, 위원회 위원 중 사외이사 1명이 2018.12.26 사임하여 2018년 12월말 기준 위원회는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3 정기주주총회 이전>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조용병	상임	위원장	2017.3.23	2018.3월 정기주주총회일
이만우	사외	위원	2017.3.23	2018.3월 정기주주총회일
히라카와 유키	사외	위원	2017.3.23	2018.3월 정기주주총회일
이정일	사외	위원	2017.3.23	2018.3월 정기주주총회일
이성량	사외	위원	2017.3.23	2018.3월 정기주주총회일

<2018.3 정기주주총회 이후>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조용병	상임	위원장	2018.3.22	2019.3월 정기주주총회일
이만우	사외	위원	2018.3.22	2019.3월 정기주주총회일
히라카와 유키	사외	위원	2018.3.22	2019.3월 정기주주총회일
주재성	사외	위원	2018.3.22	2019.3월 정기주주총회일

김화남	사외	위원	2018.3.22	2019.3월 정기주주총회일
-----	----	----	-----------	--------------------

☞ 2018.12.26 위원 1명(주재성) 사임

다.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 관련

(1)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 내부규정

당사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4년 5월 10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2014년 12월 24일 시행된 모범규준 상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대표이사 경영승계 과정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 2월 26일 이사회에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의 주요 내용은 자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종료 사유와 시기,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관리방법, 비상승계계획, 자회사의 경영진 후보 인선 기준 및 심의 관련 사항 등입니다.

(2)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당사는 안정적 경영승계를 위해 2011년 자회사 CEO 승계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을 상시 관리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의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격요건, 법률요건 등을 고려하여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승계시점 자회사 CEO로서 요구되는 전략적 역할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을 심의합니다.

금융회사인 자회사의 대표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하는 임원의 자격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법 및 시행령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동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동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일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후보군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자회사 대표이사 임기만료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하되, 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2을 초과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합니다.

금융회사인 자회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된 대표이사 후보에 대하여 관계법규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자회사의 주주총회에 추천하며, 추천된 대표이사 후보는 해당 자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됩니다.

또한, 당사는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회사 대표이사 육성 후보군을 선정하여 미래의 자회사 CEO 후보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에 대한 통찰력, 전사관점 의사결정, 전략실행/추진력, 리더십, 대내외 영향력 등 다양한 요소의 개발 프로그램을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육성 후보군의 경영성과 및 개발활동의 결과를 정기적으로 심의, 평가하고, 자회사 대표이사를 추천함에 있어 후보군 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회사 대표이사가 불의의 사고, 갑작스러운 건강 상 이유 등으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경영승계 계획상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가속승계 프로세스를 통해 자회사 대표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규정에 따라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대표이사 대행자 및 회사 운영계획, 자회사 대표이사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 현황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에 따라 후보자 선정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안정적 경영승계를 통한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확립하고자 자회사 대표이사 육성 후보군을 선정하여 미래의 자회사 CEO 후보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17일 개최된 제4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총 19명의

육성 후보를 선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후보군 육성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에 따라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후보군 관리와 관련된 실무지원은 지주회사 인사팀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육성후보군별 경영성과, 개발활동에 대한 심의 및 평가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현황>

구분	후보수	추천 경로
내부	19명	2018년 5월 17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육성후보군 선정

(4)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업무 지원부서 현황

당사는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은 팀장과 팀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승계 계획 운영 등 경영리더 육성 및 관리, 경영진 성과 보상 및 평가, 그룹 인사정책 방향 수립 및 실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8조에 따라 상시적인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그 밖에 대표이사 경영승계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에 따라 인사팀은 동 위원회가 경영승계 계획 적정성과 대표이사 후보자 선발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1회 이사회에 보고하는 실무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현황>

- 부서명 : 신한금융지주회사 인사팀
- 직원수 : 총 6명
- 운영 내역

일자	운영내역	비고
2018.2.21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국외 현지법인 선정에 관한 사항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1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8.3.6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평가에 관한 사항 관련 실무 지원	제2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8.3.22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위원장 호선에 관한 사항 관련 실무 지원	제3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8.5.17	2018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4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8.8.16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검증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실무 지원 2018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개발계획(안) 심의에 관한 사항 관련 실무 지원	제5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8.12.21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6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라.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018년도에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총 6회 개최되었으며, 기간 중 부의된 결의안건 9개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018년 3월 개최된 제3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는 제주은행장 후보를 추천하였으며, 5월에 개최된 제4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19명의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을 선정하고, 육성후보군 개발계획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제6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신한저축은행, 신한DS,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대체투자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2018년도 제1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 2018.2.21(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조용병	이만우	이성량	이정일	히라카와 유키	
1. 이사 성명	조용병	이만우	이성량	이정일	히라카와 유키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 안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국외 현지법인 선정에 관한 사항)						
---	--	--	--	--	--	--

2018년도 제2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 2018.3.6(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조용병	이만우	이성량	이정일	히라카와 유키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 안건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평가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8년도 제3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 2018.3.22(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조용병	이만우	히라카와 유키	주재성	김화남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위원장 호선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8년도 제4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 2018.5.17(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조용병	이만우	히라카와 유키	주재성	김화남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2018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8년도 제5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 2018.8.16(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조용병	이만우	히라카와 유키	주재성	김화남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검증 등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 안건 (2018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개발계획(안) 심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8년도 제6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 2018.12.21(금)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조용병	이만우	히라카와 유키	주재성	김화남	
1. 이사 성명	조용병	이만우	히라카와 유키	주재성	김화남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7.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감사위원회는 회계와 업무의 감사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의하며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 개선하고,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운영하되,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 기관,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을 출석하도록 하거나 관련 자료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0조 제5항 및 감사위원회규정 제3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집행 감독

① 이사회 등 안건에 대한 감독

이사회 안건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 의거 상근감사위원의 사전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일상감사 사항 등을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규정상 상근감사위원은 위임사항 중 중요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근감사위원은 2018년 10회의 이사회 안건 전부에 대한 사전 일상감사를 진행하여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②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집행에 대해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상법 제 412조, 지배구조법 제20조 제4항, 감사위원회규정 제4조, 제15조),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중지를 요구(상법 402조, 감사위원회규정 제14조)하거나,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즉시 보고(감사위원회규정 제18조)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주요 결재문서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 따라 상근감사위원으로 하여금 사전 또는 사후 일상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해 동안 사전 일상감사 203건, 사후 일상감사 1,487건 총 1,690건 일상감사를 수행하였으며, 일상감사 이외의 경영진의 주요문서 152건에 대해 공람을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보조조직인 감사팀은 2018년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내부통제시스템 운영평가,

공시통제 운영실태 점검 결과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정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요청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제13조, 감사위원회규정 제14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정 시 외부감사인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감사위원간 대면회의를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 평가 기준)

감사보수, 감사인력, 감사계획, 전문성 등 4개 분야에서 총 18개 세부항목

감사보수(배점 20%) : 감사시간, 시간당 임금단가 등

감사인력(배점 30%) : 수습회계사, 매니저, 전문가 투입비율 등

감사계획(배점 15%) : 감사위원회 대면회의, 기말감사 투입시간 등

전문성(배점 35%) : 금융기관 감사실적, 자체 품질관리 적정성 등

2018년 12월 27일 제6차 임시 감사위원회는 사전결의된 외부감사인 선정절차와 기준에 따라 삼정회계법인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방지를 위해 계약기간 중 비감사용역의 제공이 제한됩니다.

당사와 삼정회계법인과의 감사업무 계약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용	감사보수(2019년)	감사시간(2019년)
-----	-------------	-------------

분기,반기,연간 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	976백만원(부가세 제외)	10,005시간
-----------------------	----------------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감사인 선정(계약)당시 정한 감사계획, 감사시간, 감사인력 등이 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상근감사위원 관련 사항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계획/실시/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 사항 및 일상감사 업무 등을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감사위원회 규정 제10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업무 수행 전반 및 일상감사 등에 대해 상근감사위원에게 권한을 위임 중이며, 상근감사위원은 위임 받은 사항 및 주요 업무수행과정에서 보고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2018년 총 3회(1차 임시, 2차 정기, 3차 정기) 감사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라) 재무제표 검토 등

① 감사위원회의 재무제표 검토 등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합니다. (상법 제447조의 4, 감사위원회규정 제14조)

감사위원회는 2019년 2월 26일 제1차 정기 감사위원회에서 2018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결의하였으며, 결의한 감사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를 검토하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조, 실사, 조회, 기타 적절한 감사 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둘째, 재무상태표, 연결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넷째, 영업보고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②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 등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시일 현재 삼정회계법인은 2018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 3월 초 완료 예정으로 공시일 현재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삼정회계법인은 분반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당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상의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 결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매분기 내부회계관리부서로부터 결산실적을 보고받아 심의 중이며, 외부감사인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③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등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매 사업연도마다 보고 받고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의거 2019년 2월 12일 제1차 임시 감사위원회에, 2018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마)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평가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재무보고내부통제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있습니다.(주식회사의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감사위원회규정 제14조, 제18조)

2019년 2월 12일 제1차 임시 감사위원회는 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독립적으로 평가한 결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관련 규정과 모범기준에 근거, 재무제표 왜곡을 예방 및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설계된 통제활동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바)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위원회는 연말 감사팀의 익년도 감사계획을 결의하고,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감사실시결과

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규정 제14조, 제18조)

2017년 12월 28일 제5차 임시 감사위원회는 2018년 연간 감사계획을 승인하였고, 2018년 5월 24일 제2차 정기 감사위원회와 2018년 8월 27일 제3차 정기 감사위원회는 감사진행상황을 심의하였습니다.

2019년 2월 12일 제1차 임시 감사위원회는 2018년 연간 감사업무 추진실적을 심의 후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진술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에 대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13조, 감사위원회규정 제14조)

2018년 3월 21일 제3차 임시 감사위원회는 제32기 정기 주주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감사 결과, 정기 주주총회 의안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내용이 없음을 결의하였고, 상근감사위원은 같은 날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기 주주총회에 제출된 의안 및 서류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내용이 없음을 보고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2018년 총 3회 임시 주주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감사결과 임시주주총회 의안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내용이 없음을 결의하였고, 상근감사위원은 같은 날 개최된 임시 주주총회에 제출된 의안 및 서류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내용이 없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아)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개정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의 개정은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 감사위원회 결의사항에 해당합니다.

최근 개정사례로는 2017년 8월25일 제3차 정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인의 감사결과 보고 조항 등에 대한 개정을 결의하였습니다.

(자) 상근감사위원 평가

감사위원회는 2014년 2월 26일 제2차 정기 감사위원회에서 결의된 『상근감사위원 평가체계 개선』에 따라 상근감사위원의 전략과제 수립 및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7일 제2차 임시 감사위원회는 2018년 상근감사위원 전략과제 수립(안)을 결의하였고, 2018년 12월 27일 제6차 임시 감사위원회는 2018년 상근감사위원의 주요실적을 검토하여 상근감사위원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차)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의 적정성 평가

감사위원회는 연 1회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절한 작동여부를 평가하고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감사위원회규정 제14조, 제18조)

2019년 2월 12일 제1차 임시 감사위원회는 당사 내부통제시스템은 회사 각 영역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수립되어 있고 이를 조직과 업무분장상에 반영하여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등 자금세탁 관련 내부통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카) 준법감시인으로부터의 보고사항 검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계획에 관한 사항 및 내부통제 기준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시인의 보고내용을 심의합니다.(감사위원회규정 제14조, 내부통제기준 제11조)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준법감시인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활동계획을 보고받아 준법감시인 활동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은 2018년 2월 21일 제1차 정기 감사위원회에서 2018년 활동계획을, 2019년 2월 26일 제1차 정기 감사위원회에서 2018년 추진실적을 보고하였고, 감사위원회는 보고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나. 구 성(감사위원회위원)

(1) 총 괄

회사 감사위원회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라 3명 이상의 이사로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 중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하고,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구성합니다. (정관 제38조 ,감사위원회 규정 제7조)

2018년 2월 21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로 성재호 감사위원을 분리 추천하였고, 김성렬 사외이사 후보를 감사위원으로 신규 추천하였습니다.

본 추천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요건(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분리선임)에 따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한 사항입니다.

2018년 3월 2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감사위원 후보가 임기 '19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감사위원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라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감사위원회규정 제7조)

1.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업계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법학 또는 상경 계열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교, 연구소 등 학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10년 이상 금융업무 관련 기관에 종사한 자로서 회계, 내부통제, 감사, 전산 등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상기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2018년 말 현재 감사위원회는 2명의 사외이사에 이석우 상근감사위원을 포함 총 3명으로 구성하고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판단에 대하여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석우 상근감사위원은 재무부 및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에 해당합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경력
성재호	사외	위원장	'15.3.26	'19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이성한	사외	위원	'16.3.23	'18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 (~'18.3.21)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 본부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김성렬	사외	위원	'18.3.21	'19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	행정자치부 차관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석우	상임	상근감사 위원	'16.6.3	'19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	재무부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원 총무국장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8년에는 총 10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어, 감사위원 모두 100% 참석 하였습니다. 결의 사항 12건, 심의사항 13건 총 25의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개최 전에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감사팀장으로 하여금 감사위원별로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설명을 실시토록 하고, 사전설명 당시 감사위원의 추가 요청자료 및 의견 내용이 본 회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중 감사위원회는 제32기 감사보고서 제출의 건, 제32기 정기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의 건,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2019년 감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결의 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중 감사위원회는 2017년 감사결과 보고, 2017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보

고, 2017년 내부통제시스템 운영평가 보고, 2017년 공시통제의 적정성 검토 보고, 준법감시팀 내부통제 결과 및 계획 보고, 2018년 감사 진행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심의 하였습니다.

성재호 감사위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법률분야에 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개정 외감법의 사규반영, 외부감사인 선정 Process,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중요성 등 각종 Legal 이슈에 대하여 활발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성렬 감사위원은 행자부 및 경기도 부지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적/예방적 컨설팅 감사의 필요성과 상시적 내부통제시스템의 중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석우 상근감사위원은 금융직 관료 및 금융 감독기관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적 Risk통제를 통한 건전영업 지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포용적 금융 확대 등에 대하여 각종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18년도 제1차 임시 감사위원회: 2018.1.23 (10:35~10:45) / 안건 통지일 : 2018.1.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성재호	이성한	이석우	비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① 1차 임시주총 의안 및 서류의 진술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	----	----	----

결의사항인 제1차 임시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의 진술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부의 안건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내용이 없음을 결의하였습니다.

(나) 2018년도 제2차 임시 감사위원회: 2018.2.7(13:00~13:20) / 안건 통지일 : 2018.1.2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성재호	이성한	이석우	비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① 2017년 재무제표 현황 보고	특이의견 없음			
② 2017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특이의견 없음			
③ 2017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④ 2017년 감사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② 2018년 상근감사위원 전략과제 수립 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사항인 2018년 상근감사위원 전략과제 수립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들은 건전.정도 경영정책, 생산·포용적 금융 강화, 대외Risk 선제대응에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고 결의하였습니다

(다) 2018년도 제1차 정기 감사위원회: 2018.2.21 (15:15~15:40) / 안건 통지일 : 2018.2.7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성재호	이성한	이석우	비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① 2017년 내부통제시스템 운영평가 보고	특이의견 없음			
② 2017년 공시통제의 적정성 검토 보고	특이의견 없음			
③ 준법감시팀 내부통제 결과 및 계획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① 제32기 감사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사항인 제32기 사업연도 회계 및 결산, 영업보고서 등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를 결의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라) 2018년도 제3차 임시 감사위원회: 2018.3.21 (14:00~14:10) / 안건 통지일 : 2018.3.7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성재호	이성한	이석우	비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① 내부통제기준 개정에 관한 사항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① 정기주총 의안 및 서류의 진술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사항인 제32기 정기 주주총회 부의안건과 관련하여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내용이 없음을 결의하였고,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와 관련하여 회사의 내부감시장치는 전반적으로 걱정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결의하였습니다.

(마) 2018년도 제4차 임시 감사위원회: 2018.3.21 (15:10~15:20) / 안건 통지일 : 2018.3.7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성재호	김성렬	이석우	비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①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2018년도 제2차 정기 감사위원회: 2018.5.24(15:00~15:15) / 안건 통지일 : 2018.5.1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성재호	김성렬	이석우	비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① 2018년 1분기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검토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② 감사 진행상황 보고(1~5월)	특이의견 없음
--------------------	---------

(사) 2018년도 제3차 정기 감사위원회: 2018.8.27(16:10~ 16:30) / 안건 통지일: 2018.8.1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성재호	김성렬	이석우	비고
1. 이사 성명	성재호	김성렬	이석우	비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① 2018년 상반기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검토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② 감사 진행상황 보고(5 ~ 8월)	특이의견 없음			

(아)2018년도 제4차 정기 감사위원회: 2018.11.2(07:50~08:05) / 안건 통지일 : 2018.10.1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성재호	김성렬	이석우	비고
1. 이사 성명	성재호	김성렬	이석우	비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① 2018년 3분기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검토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① 제2차 임시주총 의안 및 서류 진술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사항인 제2차 임시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의 진술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부의 안건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내용이 없음을 결의하였습니다.

(자) 2018년도 제5차 임시 감사위원회: 2018.11.28(11:30~11:50) / 안건 통지일 : 2018.11.1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성재호	김성렬	이석우	비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① 외부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의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개정 외감법 적용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선정할 외부감사인의 선정기준과 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결의하였습니다.

(차) 2018년도 제6차 임시 감사위원회: 2018.12.27(09:30~09:50) / 안건 통지일 : 2018.12.1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성재호	김성렬	이석우	비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① 외부감사인 선정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 제3차 임시주총 의안 및 서류 진술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③ 2019년 감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④ 2018년 상근감사위원 평가에 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	----	----	----

개정 외감법을 반영한 2019 ~ 2021년 3개년간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였으며, 제3차 임시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의 진술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부의안건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내용이 없음과 2019년 감사계획 등을 결의하였습니다.

라. 감사보조조직 등

신한카드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내부감사부서로서 감사팀 1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 감사위원회 감사보조조직의 명칭은 '감사팀'으로 감사팀장이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부장 1명, 부부장 5명, 차장 5명, 과장 1명, 대리 1명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팀은 건전 / 정도경영 정착, 생산적 / 포용적 금융 강화, 대외리스크 선제대응을 기본 방향으로 종합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팀은 감사위원회가 승인한 연간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연 1회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사위원회 보고내용]

일 자	보고대상	보고 내용
2.7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 보고 2017년 감사결과 보고

2.21	감사위원회	내부통제시스템(자금세탁 포함) 운영평가 보고 공시통제 적정성 검토 보고
5.24	감사위원회	1 ~ 5월 감사결과 보고
8.27	감사위원회	5 ~ 8월 감사결과 보고

8. 위험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당사 위험관리위원회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로, 회사 경영상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의 인식, 측정, 통제 등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감시합니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부담 가능한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변경, 리스크 유형별 허용한도 설정/초과승인, 리스크관리규정 제·개정 및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모니터링 역할을 중심으로 직·간접 지도·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3조(구성)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합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경영진,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 리스크관리부문과 유기적인 보고/통제/협의 구조하에 리스크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를 통한 주요사항 결의 및 보고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당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리스크에 대한 오너십을 갖고 제반 비즈니스를 수행함에 있어 리스크와 수익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리스크관리 철학을 정하고 조직 구성원이 비즈니스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 원칙은 회사의 리스크 철학 및 그룹 리스크관리규정에서 정한 리스크관리원칙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1. 모든 영업활동은 사전 설정된 위험성향 내에서 리스크와 수익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행해야 한다.
2. 경영진의 관여를 제고하는 리스크 관련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한다.
3. 영업부문과 독립적인 리스크 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4. 비즈니스 의사결정시 리스크를 명확히 고려하게 하는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한다.
5. 선제적이고 실용적인 리스크 관리 기능을 지향한다.
6. 평상시에도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신중한 시각을 공유한다.
7. 그룹리스크관리모범규준을 준수하고 리스크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2018년 리스크관리 추진 실적>

상기 리스크관리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진행 된 2018년도 리스크관리 중점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Digital First, One Shinhan(신한금융그룹 그룹사간 시너지 활동 강화) 기반 신용평가체계 고도화입니다. 관련 내용으로는 Digital 기술활용 신용평가, One Shinhan 기반 신용관리 정교화 등의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둘째, 수익증대를 위한 능동적 여신전략 운영입니다. 관련 내용으로는 빅데이터 활용 자격/한도

기준 고도화, 금융신사업 리스크관리 고도화 등의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셋째, 위기 대응체계 강화 및 잠재리스크군 사전관리입니다. 관련 내용으로는 위기 대응체계 정교화, 잠재리스크群 사전관리 등의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넷째, 해외법인 리스크관리 고도화 입니다. 관련 내용으로는 해외법인 리스크관리 체계화, 해외법인 안정적 성장지원 등의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회사내 관련 임원, 부서장이 참석하는 리스크관리협의회 및 이사회內위원회인 위험관리위원회에 상시적으로 보고 되고, 향후 대책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규정에 의거, 회사가 직면하는 모든 중요한 리스크를 인식하고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진출, 신상품 또는 신서비스의 개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변경 등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종합적인 리스크 점검을 거친 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는 신용, 금리, 유동성, 운영 및 기타 리스크를 평가 또는 관리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리스크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측정 및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통제와 관련하여, 회사가 보유한 자기자본 대비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한도관리체계를 수립 및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위기상황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위기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방안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자본한도 입안 및 한도초과시 사후대책,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의 신설 및 변경, 리스크 관련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지주회사와 협의토록 하여 그룹차원의 통합적인 리스크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재무/사업계획 수립시 위험수준을 감안한 최대 자산성장 가능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사전에 제시하고, 확정된 재무/사업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가용자본, 위험자본총량, 완충자본을 포함한 위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또한, 신한지주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회사의 총리스크한도 범위 내에서 당사 위험관리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전사 총리스크한도 및 유형별 리스크한도를 설정하여 리스크가 한도 내에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리스크 한도 근접시 지주사와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조정이 필요할 경우, 한도 유형, 한도조정 사유 등에 따라 지주사 또는 당사 위험관리위원회 결의를 통해 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2018년도 12월 27일 개최된 제7차 위험관리위원회는 2019년 재무계획 상 영업자산 증가, 금리 상승 예상치 등을 반영하여 2019년 전사 총리스크한도 및 유형별 리스크한도를 결의하였으며, 최대가능 위험성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해외 사업 투자 등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현지법인 관련 자본금 출자 및 증자, 기업 인수 합병, 기타 이사회 결의 대상인 지분참여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위험관리위원회의 결의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투자 관련 전략적 Buffer를 리스크한도로 별도 설정하여 한도범위내에서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27일 개최된 제7차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해외법인 인수계획을 반영하여 리스크 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라)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리스크관리 관련 규정은 크게 위험관리위원회의 정의 및 역할을 규정한 위험관리위원회규정과 리스크관리 조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리스크관리규정으로 구분되어 있고 리스크관리규정에 의거, 구체적 리스크관리 대상, 방법 및 절차를 명시한 리스크관리업무 규칙/ 종합 위기관리규칙/ 리스크 사전사후 점검운영규칙으로 세분화되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 규정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리스크관리 규정은 위험관리위원회 결의를 통해 제정 및 개폐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이 없었습니다.

(마) 기타

그 밖에 각종 리스크측정 및 모니터링 결과, 자산건전성분류 기준 및 현황과 대손충당금적립 기준 및 현황, 리스크관리협의회가 결의한 중요사항 및 실행결과 등을 보고 받아 주요 리스크 변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모니터링 합니다.

나. 구성(위험관리위원회위원)

(1) 총괄

위험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금융,경제,경영,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한 2인의 사외이사와 1인의 비상임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였으며, 금융회사 종사 경험이 있는

2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2018.3 정기주주총회 이전>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최초선임일	임기 만료일
김동환	사외이사	위원장	'16.3.23	'18년 개최 정기주총일
박평조	사외이사	위원	'14.3.31	
장동기	비상임	위원	'18.1.23	

<2018.3 정기주주총회 이후>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최초선임일	임기 만료일
이성한	사외이사	위원장	'18.3.21	'19년 개최 정기주총일
박평조	사외이사	위원	'14.3.31	
장동기	비상임	위원	'18.1.23	

(위험관리위원 위원별 선임 사유)

김동환 위원 : 감사원 금융/재정분과 자문위원, 감사원 금융/재정분과 자문위원, 금융학회 부회장,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의 경험을 통해 금융 리스크 분야에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위험관리위원으로 선임 함.

박평조 위원 : 샤프로 신용금고 총대표, 신용조합 북해상은 이사장 등의 금융회사 경험과 2006년부터 기업체(미마츠 기업)를 운영하는 등 회사 경영 노하우 등을 통해 회사 리스크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위험관리위원으로 선임 함.

장동기 위원 : 신한은행에서 종합기획부, 국제부, 자금시장부, 재무기획부 등에서 근무하고, 신한금융지주회사 재무팀장, 신한은행 자금시장본부장, 신한금융지주 재무팀 본부장 등을 역임하는 등 자금/재무 분야 전문가로서 회사의 리스크 관리 영역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위험관리위원으로 선임 함.

이성한 위원 :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국제경제과 경험, 경제협력국 대외경제심의관 역임,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장,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본부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 리스크 관리 분야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위험관리위원으로 선임 함.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4조에 따라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18년에는 총 7회의 위험관리위원회가 소집되었고, 위원의 평균 참석율은 100%로 참석율이 높아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사 리스크관리팀은 위원들에게 대면 사전설명을 실시하여 안건의 내용이 숙지된 후 심도 있고 효율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18년 제1차 정기 위험관리위원회는 글로벌 소비자금융사 인수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18년 제2차 정기 위험관리위원회는 IFRS 9 충당금 도입, 리스크관리 관련 규칙 개정 결과 및 그룹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을 보고받아 점검하였고, '18년 제3차 임시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이성환 이

사로 선임하였습니다. '18년 제4차 정기 위험관리위원회는 통합위기상황 분석 결과를 보고받아 리스크 관련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18년 제5차 정기 위험관리위원회는 해외리스크 모니터링 보고와 관련하여 관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18년 제6차 정기 위험관리위원회는 인도네시아 해외법인 증자를 결의하였습니다. '18년 제7차 임시 위험관리위원회는 '18년 리스크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리스크 측정 및 모니터링 보고 등 정기 보고사항에 대해 분기 단위로 보고를 받아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18년도 제1차 정기 위험관리위원회 : 2018.1.23일(10:55 ~ 11:10) /

안건 통지일 : 2018.1.9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동환	박평조	장동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글로벌 소비자금융사 인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8년도 제1회 위험관리위원회는 글로벌 소비자금융사 인수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결의하였습니다.

(나) 2018년도 제2차 정기 위험관리위원회 : 2018.2.21일(15:25 ~ 15:50) /

안건 통지일 : 2018.2.7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동환	박평조	장동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17년 4분기末 리스크 측정 및 모니터링 보고	특이의견 없음			
IFRS 9 총당금 도입 보고	특이의견 없음			
리스크관리 관련 규칙 개정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리스크관리협의회 회의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그룹 위험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2018년도 제2차 정기 위험관리위원회는 2017년 4분기末 리스크 측정 및 모니터링 현황, 리스크관리협의회 회의 결과, 그룹 위험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등 정기보고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2018년 IFRS 9 총당금 도입 관련 내용 및 리스크관리 관련 규칙 개정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리스크관리 관련 규칙인 리스크관리협의회 규칙 개정 관련, 2018년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리스크관리협의회 위원 및 직책명칭이 반영되었습니다. 장동기 위원은 카드업이 향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기를 극복해야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김동환 위원장은 위험성향 및 금리리스크 관련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법인의 부실율이 하락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며, 향후에도 채권회수 및 담보처리 관련 유의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하였습니다. IFRS 9 총당금 도입 보고 관련하여 김동환 위원장은 Stage II 여신 규모 공시 등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다) 2018년도 제3차 임시 위험관리위원회 : 2018.3.21일(15:10 ~ 15:20) /

안건 통지일 : 2018.3.7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이성한	박평조	장동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8년도 제3회 위험관리위원회는 2018년도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이성한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라) 2018년도 제4차 정기 위험관리위원회 : 2018.5.24일(15:00 ~ 15:15) /

안건 통지일 : 2018.5.10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이성한	박평조	장동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2018년 1분기말 리스크 측정 및 모니터링 보고	특이의견 없음			
통합위기상황 분석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리스크관리협의회 회의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2018년도 제4차 정기 위험관리위원회는 2018년 1분기말 리스크 측정 및 모니터링 현황, 리스크관리협의회 회의 결과 등 정기보고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통합위기상황 분석 결과를 보고받아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박평조 위원은 1분기중 카드론 자산증가율이 크게 나타난 원인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으며, 이성한 위원장은 개인신용평가 모형 및 신용리스크 측정요소 보수성 검증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을 질의하였습니다. 장동기 위원은 통합위기 상황 분석의 시나리오별 이익 발생규모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이성한 위원장은 해외법인 건전성 뿐만 아니라 진출 국가의 경기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마) 2018년도 제5차 정기 위험관리위원회 : 2018.8.27일(16:10 ~ 16:30) /

안건 통지일 : 2018.8.13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이성한	박평조	장동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18년 2분기말 리스크 측정 및 모니터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리스크관리협의회 회의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2018년도 제5차 정기 위험관리위원회는 2018년 2분기말 리스크 측정 및 모니터링 현황, 리스크관리협의회 회의 결과 등 정기보고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박평조 위원은 시장리스크 한도 소진율이 낮은 원인을 질의하였고, 이성한 위원장은 현재 해외법인 자산 비중이 크지 않으나, 향후 자산규모가 크게 성장하면 리스크 총량 등 관리 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장동기 위원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자산건전성 추세와 가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바) 2018년도 제6차 정기 위험관리위원회 : 2018.11.2일(07:50 ~ 08:05) /

안건 통지일 : 2018.10.19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	----------	----

				여부
1. 위원 성명	이성한	박평조	장동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인도네시아 해외법인 자본금 증자	특이의견 없음			
2018년 3분기말 리스크 측정 및 모니터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리스크관리협의회 회의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2018년도 제6차 정기 위험관리위원회는 인도네시아 해외법인 자본금 증자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으며, 3분기末 리스크 측정 및 모니터링 현황, 리스크관리협의회 회의 결과 등 정기보고 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장동기 위원은 인도네시아 해외법인의 레버리지 및 자본비율을 확인하였으며, 이성한 위원장은 자본금 증가에 따른 정량적 리스크 점검 체계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박평조 위원은 인도네시아의 신용카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 사용 문화를 만들어가야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보통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장동기 위원은 추석연휴로 인한 연체율 및 대손충당금 영향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사) 2018년도 제7차 임시 위험관리위원회 : 2018.12.27일(9:40 ~ 9:50) /

안건 통지일 : 2018.12.13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이성한	박평조	장동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2019년 리스크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8년도 제7차 임시 위험관리위원회는 2019년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과 관련하여 재무 계획 상 영업자산 증가, 금리 상승 예상치 등을 반영하여 2019년 전사 총리스크한도 및 유형별 리스크한도를 결의하였으며, 최대가능 위험성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리스크한도 설정시 해외법인 인수계획을 반영하여 신용리스크 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장동기 위원은 사업계획상 예상되는 주요 영업자산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였으며, 해외법인 인수계획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성한 위원장은 2019년 가계신용위험 증가 및 부도율 증가에 따른 총리스크 영향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9.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해당 사항 없음

제 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가. 총괄

당사의 보수위원회는 회사의 보수정책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임원 등에 대한 보수체계가 회사의 성과 및 리스크 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성과주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운영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관련 내부규정으로는 보수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으며, 당사 정관 제32조 제1항 제4호 및 이사회규정 제18조 제1항 제4호에 설치 근거를 두고 2015년 3월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2017년 3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기존 '보상위원회'에서 '보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보수위원회규정 제3조에 따라 사외이사인 보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18년말 기준으로 위원 3인 모두 재임기간이 1년 미만입니다.

보수위원회 활동 내역의 서류 보존 의무와 관련하여 보수위원회규정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보존하고 있으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7조에 보수위원회의 설치, 운영 내역과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부서의 관리, 감시활동 내역을 서류로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보수위원회는 경영진 등에 대한 평가 및 보수체계가 건전하게 수립되어 운영되는지를 관

리하며,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합니다.

또한, 경영진에 대한 평가 및 보수안을 확정하며, 경영진 평가/보수체계의 세부사항을 결의합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평가 및 보수체계를 결정하며, 성과보수를 받는 금융투자 업무담당자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나. 구성

1) 총괄

당사 보수위원회는 보수위원회규정 제3조, 제4조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3조에 의거 2인 이상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여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년말 기준으로 당사 보수위원회는 총 3인(김성렬, 성재호, 장동기)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인 김성렬 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이 사외이사로 보수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 중 1인 이상을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이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리스크관리 측면이 보수위원회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중 장동기 위원은 금융회사 근무 경험이 있으며, 또한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보수 체계와 리스크관리 측면이 연계될 수 있도록 보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김성렬, 성재호 위원이 선임되기 이전인 2018년 3월 주총 이전에는 사외이사인 이성한, 김동환 이사가 보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2) 구성원

<2018.3월 정기주주총회 이전>

성명	상임/사외/비 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여부	위험관리 위원회 위원여부
이성한	사외	위원장	2017.3.22	2018.3.21	-	-
김동환	사외	위원	2017.3.22	2018.3.21	-	해당
장동기	비상임	위원	2018.1.23	'19년 개최 정기 주주총회일	해당	해당

* 임보혁 이사(위원) '18.1.23일 사임으로 장동기 이사 선임

<2018.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

성명	상임/사외/비 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여부	위험관리 위원회 위원여부
김성렬	사외	위원장	2018.3.21	'19년 개최 정기 주주총회일	-	-
성재호	사외	위원	2018.3.21	'19년 개최 정기 주주총회일	-	-
장동기	비상임	위원	2018.3.21	'19년 개최 정기 주주총회일	해당	해당

다. 권한과 책임

1) 총괄

보수위원회규정 제8조에 의거 당사 보수위원회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임원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은 재임기간은 물론 퇴임 후에도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회사와 임직원에게 대한 보수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18년 2월 21일 개최된 제1회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회사 경영진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기본급과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를 결정하고 보수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18년 2월 21일 개최된 2018년도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대상 및 작성내용에 대하여 심의하였고, 이를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회사 및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습니다.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18년 2월 21일 개최된 제1회 보수위원회에서 경영진 평가 및 보수체계 (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보수체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 및 보수 관련 리스크 관리 및 준법감시 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평가하여, 회사의 보수체계가 지배구조법 등 관련 외규를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는 '라.1)의사결정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중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2018년 2월 21일에 개최된 제1회 보수위원회에서 보수 체계가 회사의 재무상황 및 리스크와의 연계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2017년도 보수체계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보수 관련 리스크 관리 및 준법감시 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배구조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당사 보수위원회는 2018년 2월 21일 개최된 제1회 보수위원회에서 2017년도 보수체계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회사의 보수정책 및 운영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 ① 국내: 임원(경영진 등) 및 금융투자업무대상자에 적용
- ② 해외: 해당사항 없음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수 대상자의 결정

보수위원회 규정 제6조에서 변동보수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8년 제1회 보수위원회에서 변동보수 대상자를 결정하였습니다.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한 당사 변동보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인원수	직명
임원	8명	사장, 부사장, 상근감사위원, 상무
특정업무 종사자	0명	해당사항 없음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의사결정 절차

당사 보수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시에는 소집절차의 생략이 가능하나 2018년도에 소집절차가 생략된 사례는 없습니다.

회의일 통지 후 보수위원회 위원들에게 별도의 사전설명 절차를 통해 보수위원회 부의안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설명시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 안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통하여 위원회 결의에 참가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활동내역 개요

당사 보수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며 경영진 등의 평가보수체계가 건전하게 수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2018년 보수위원회는 총 2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8년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의 확정, 2017년 경영진 평가등급 확정, 2017년도 연차보수평가(안) 결의에 대한 안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보수위원회 개최시마다 개별 위원들에게 주요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을 진행하여 보수위원회 안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3) 회의 개최내역

가) 2018년도 제1회 보수위원회 : 2018.2.21 (수)

[안건통지일 : 2018.2.7(수)]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	----------	------

1. 위원성명	이성한	김동환	장동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보고안건 없음)	-	-	-	
4. 의결안건				
가. 2017년 경영진 평가등급 확정 및 단기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7년 보수체계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17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18년 경영진 평가기준 확정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2018년 경영진 등 보수체계 및 기준 확정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2018년 사내 이사 및 경영진 보수 운영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1회 보수위원회는 위원 3명 전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결의안건 6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7년도 경영진 평가등급 확정 및 단기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으며, 2017년도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가 전년도 평가 및 보수체계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산정되었는지에 대해 심의하고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보상체계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회사의 보수체계가 지배구조법 등 외규를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주사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2018년도 경영진 등의 평가, 보수체계 및 보수운영안에 대해 논의하고 결의하였습니다.

나) 2018년도 제2회 보수위원회 : 2018.3.21 (수)

[안건통지일 : 2018.3.7(수)]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김성렬	성재호	장동기	
1. 위원성명	김성렬	성재호	장동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보고안건 없음)	-	-	-	
4. 의결안건				
가.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회 보수위원회는 위원 3명 전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보수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성렬 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4) 평가

보수위원회는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9조 제4항에 의거 연1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2016년 12월 29일 개최한 제8회 임시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의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2019년 1월중 평가를 진행 및 종료하였으며, 이를 위원회 운영 지원 시 참고하고 있습니다.

가) 평가목적: 위원회 운영 지원 시 참고자료 활용

나) 평가주체: 위원 전원에 의한 평가

다) 평가기준

① 운영평가: 회의시간의 적정성, 안건의 적정성, 회의 개최빈도의 적정성, 회사의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

② 역할평가: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상 명시된 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한 업무 수행 적정성 평가

라) 평가방법(절차): 5점 척도 설문 평가, 평가공정성 및 평가자 익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업체를 통한 평가 실시

2. 보수체계

가. 주요사항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가) 경영진 등에 대한 주요 성과지표

CEO 및 경영진은 담당 업무에 따라 그룹KPI, 회사KPI, 담당업무KPI, 담당업무 전략과제가 일정 비율로 업적평가에 반영되고 있으므로, 그룹·회사·담당업무의 재무/비재무적인 평가요소가 모두 성과지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근감사위원은 업무의 특성상 회사의 계량적 지표와 연계된 평가를 배제하고 담당업무 전략과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 전체 및 개인성과 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경영진 등의 경우 전사 재무성과, 담당그룹 KPI와 비계량적인 전략과제 성과를 포함하여 개인의 업적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있으며, 해당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이 변동됩니다. 아울러 장기간의 전사 성과가 직접적으로 장기성과급 산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가) 성과보수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당사의 성과보수는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단기성과급은 전년

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장기성과급은 부여 이후 4년간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일괄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정책

성과보수액 중 장기성과급은 부여 이후 4년간의 평균 성과에 의해 최종 지급 수량이 결정되고, 지급시점의 주가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당사 장기성과급 구조상 지급 이전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목표에 미달할 경우 장기보수전체 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회사의 가치가 훼손되어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도 자연히 보수 금액이 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성과급 지급 이전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임하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감독기관의 징계를 받은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성과보수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보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미확정의 결정 기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기성과급은 부여 당시 일정 수량의 주식수가 부여되고, 4년간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주식수가 변동되며, 최종 운영기간 종료시점의 주가에 따라 최종 지급 금액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최종 운영기간이 종료되어야 이연하여 지급하는 보수 금액이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 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경영진 등의 고정보수는 기본급과 활동수당으로 구성되며,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변동보수는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동보수의 각 규모는 기본급의 일정 배수로 결정되며, 직위별로 배수가 차등되어 있습니다.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경영진 등의 성과보수 중 단기성과급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장기성과급은 신한지주 주식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 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변동보수 중 단기성과급은 현금으로, 장기성과급은 신한지주 주식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전체 변동보수 중 장기성과급의 비중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성과보수 중 이연 지급되는 장기성과급은 성과와 연동하여 4년간 이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장기성과급의 비중은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최고경영진의 경우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당사는 임직원의 주인의식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 노사협력 및 성과공유 등을 위해 ESOP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달성률을 기준으로 매년 일부는 현금, 일부는 주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018년은 82.4억원을 출연하여 ESOP 182,040주를 취득하여 직원에게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직원별 연간성과(목표달성도)에 연계하여 보수 지급액이 변동하는 별도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당사는 급여규정에 따라 임금 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임금 항목을 단순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기본급은 급여규정에 따라 직무/역할의 가치 및 책임의 크기,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등급별로 임금 범위가 달리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당사는 보수위원회규정 제8조에 따라 보수위원회 위원들에게 외부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2018년의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4조에 따라 임직원이 보수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개인적 리스크회피 전략 또는 보수 관련 보험을 활용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2018년도 당사의 보수체계는 전년도의 체계를 유지하였으며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나. 보수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수

(단위:명,억원)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A) ^{주1)}	법인세		임직원수(C)	임직원 평균보수 (A/C)
		차감전순이익(B) ^{주2)}	비율 (A/B)		
전년도 (2017년)	3,064	9,109	33.6%	2,798	1.10
당해년도 (2018년)	2,672	11,482	23.3%	2,639	1.01

주1)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해당 금액에는 2014년에 부여되어 회사의 과거 성과(2014년~2017년)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경영진 등의 장기성과급이 포함됨.

주2) 그룹 연결기준의 (t-1)기의 금액을 기재 (예시: 당해연도가 2018년인 경우 2017년말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재)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단위:억원)

구분		임원		직원		
		등기임원	미등기임원	관리자	책임자	사원 등
전년도 (2017년)	보수총액	10	31	222	1,685	1,117
	성과보수액	1	18	48	406	233

당해년도	보수총액	12	17	205	1,556	882
(2018년)	성과보수액	2	6	45	354	181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명,억원)

구분	수급자수 ^{주1)}	기본급 ^{주2)}	성과보수액 ^{주2)}		
				이연지급 대상	
전년도 (2017년)	경영진	9	20	27	16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당해년도 (2018년)	경영진	8	19	18	11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주1) 해당년도 중 6개월이상 경영진·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기재 (이하 동일)

주2) 보수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액(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기본급'으로, 성과와 관련하여 지급되면 '성과보수'로 분류

2) 성과보수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억원)

구분		성과보수액				
		현금	주식 ^{주1)}	주식연계상품 ^{주2)}	기타 ^{주3)}	
전년도 (2017년)	경영진	27	11	16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당해년도	경영진	18	7	11	-	-

(2018년)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	-----------	---	---	---	---	---

주1) 주식: 발생 회계연도말 현재의 시가(종가)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합리적인

방법(예: 외부평가기관 2개 이상으로부터 평가 받아 산정한 금액 등)으로 평가하여 산정

주2) 주식연계상품: 상기 주1) 주식에 준하여 평가하고 산정 (발생년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산정)

주3) 상품권, 콘도이용권 등 현금 및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금원

* 최종 지급의 형태가 현금이더라도 주식관련 보수인 경우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으로 기재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주1)}		
			지급확정	지급미확정
전년도 (2017년)	경영진	27	-	27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당해년도 (2018년)	경영진	23	-	23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주1)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수액

* 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수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 '지급확정'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으로 구분 기재하였으며, 2018년 발생 성과보수액을 2019년 1/4분기중 평가하여 이연 규모를 확정하는 경우 동 이연보수액을 2018년말기준 누적 이연보수액에 포함(이하 동일)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전년도	경영진	27	-	27	0.04	

(2017년)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당해년도 (2018년)	경영진	23	-	23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주)}					
		t기	t-1기	t-2기	t-3기	이전	
전년도 (2017년)	경영진	27	16	9	2	0.04	0.04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
당해년도 (2018년)	경영진	23	11	8	4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

주) 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 2018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수액을 2018년(t기) 발생분, 2017년(t-1기) 발생분, 2016년(t-2기) 발생분 등으로 구분]

6) 이연보수의 조정

(단위: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축소액 ^{주1)}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 ^{주4)}
		직접적 조정 ^{주2)}	간접적 조정 ^{주3)}		
전년도 (2017년)	경영진	-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당해년도 (2018년)	경영진	-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주1) 해당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결산기준) 중에서 직접적(삭감, 환수 등),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수를 축소하였으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수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 기재
- 주2) 이연보수가 직접적(삭감, 환수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 주3) 이연보수가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 주4) 잠재적으로 직접적, 간접적 조정에 노출되어 있는 이연보수액 (해당연도말 누적액 기준)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단위:명,억원)

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수액	1인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17년)	경영진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당해년도 (2018년)	경영진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주)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제외

[첨부] 관련규정(붙임 1~7) 및 선임대상 사외이사 후보 검토보고서

(붙임 1) 신한카드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상호)

본 회사는 신한카드 주식회사라 하고 영문으로는 Shinhan Card Co., Ltd.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자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업무
2.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
3.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업무
4.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발행업무
5. 선불카드의 판매업무(환불업무를 포함한다.)
6.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이용대금의 결제업무(거래의 승인업무를 포함한다.)
7. 할부금융업무

8. 시설대여업무
9. 연불판매업무
10.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업무
11. 어음할인업무
12.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 관리, 회수업무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경영여신업자가 보유한 채권 또는 이를 근거로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업무
14. 지급보증업무
15. 제1호 내지 제12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부수업무
16. 기타 신용의 공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17. 신기술사업금융업무
18. 벤처사업 관련 지분출자 및 투자업무
19. 인터넷 및 기타 e-Business 관련사업(Hub - Portal Site 운영, 쇼핑몰 운영 등 포함) 및 투자업무
20. 전자상거래 관련사업 및 투자업무
21. 통신판매업무
22. 보험대리점업무
23. 일반여행업
24. 환전업무
25. 카드의 제작대행업무
26. 부가통신업무
27. 광고업

- 28. 도, 소매업
- 29. 부동산임대업
- 30. 자동차 대여 업무
- 31.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 32. 전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전산 시스템 대여 및 판매업무
- 33. 전 각 호와 관련된 부수업무
- 34. 기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 등록하였거나 인·허가, 승인 등을 득한 업무
- 35. 기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업무

제3조 (본점 및 지점)

- ① 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점, 영업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제4조 (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hinhancard.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십억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오천주로 한다.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 ①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 종류로 한다.

제9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기명식 우선주식은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4 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으로 하고 발행시에 주주총회에서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 ③ 우선주식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⑤ 본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식으로 한다.
- ⑥ 본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시 주주총회의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 2 (상환주식)

- ① 회사는 발행시의 주주총회 결의로 우선주식을 회사 또는 그 주주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하는 것(이하 "상환 주식"이라 함)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발행할 상환주식의 수는 6억주 이내로 하고, 그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회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상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간 이전에 상환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회사가 발행된 상환주식 중 일부만을 상환하는 경우 각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상환주식 수에 비례하여 이를 상환하고, 이 때 계산상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③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액면가액, 상환시의 시가, 발행가액 또는 발행가액에 시장금리를 고려한 적정한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중에서 발행시 주주총회의 결정에 의한다..
- ④ 본 조의 상환주식은 상환기간 중 주주가 청구하는 때에 회사가 상환하거나 또는 회사가 상환기간 중 상환 결정을 한 때에 상환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단, 상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여야 한다.
- ⑤ 본 회사는 본 조의 상환주식을 제 9 조의 3 에 의한 전환우선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9조의 3 (전환주식)

- ① 회사는 6 억주의 범위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보통주식의 총수는 전환되는 우선주식의 총수와 동수로 한다.
-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전환주식이 발행된 당해 회계연도에 대한 배당은 일할배당에 의하고,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과 관련하여서는 제 11 조를 준용한다.

제10조 (신주의 인수권)

- ① 본 회사의 주주는 각자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인수권을 갖는다.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다른 비율로 신주의 인수권을 가질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제 2 호에 의한 신주배정은 2 억주, 제 3 호에 의한 신주배정은 5 억주, 제 4 호 및 제 5 호에 의한 신주배정은 12 억주, 제 6 호에 의한 신주 배정은 2 억주를 각 각 초과하지 못한다.
 - 1.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 2. 주식예탁증서의 발행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3.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우
 - 4. 자금의 조달 또는 기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5. 전략적 제휴, 기업구조조정, 또는 기타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6. 기술도입의 필요로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7. 기타 관계 법령 또는 본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
- ③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납입기일에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다른 주주 또는 제 3 자에게 이를 배정할 수 있으며,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11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본 회사가 유·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동일하게 변경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3조 (명의개서등)

-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 명의개서대리인 및 사무취급장소와 대리업무의 범위는 이사회가 결의로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제 1 항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④ 제 1 항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본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 익일부터 1 월 15 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 ② 본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 ③ 본 회사는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본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채

제15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3 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우
 - 3.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금융기관 등에게 발행하는 경우
 - 4. 전략적 제휴, 기업구조조정, 또는 기타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로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 5. 기술도입의 필요로 제휴회사에게 발행하는 경우
 - 6.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7. 기타 관계 법령 또는 본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
- ②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 주주총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

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전환가액은 사채발행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3 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사이에서 사채발행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의 이자지급에 관하여는 제 1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2 (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이사회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이하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3 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우
 - 3.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금융기관등에게 발행하는 경우
 - 4. 전략적 제휴, 기업구조조정, 또는 기타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로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 5. 기술도입의 필요로 제휴회사에게 발행하는 경우
 - 6.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7. 기타 관계 법령 또는 본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하며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그 발행가액은 사채발행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3 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사이에서 사채발행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⑤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17조 (소집)

- ①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 주주총회로 하고,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 후 3 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 ②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 18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 2 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④ 주주총회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본점 소재지 또는 그 인근지역에서 개최한다.

제18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 ② 대표이사의 결원 또는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의장의 질서 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총회장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 (의결권)

본 회사의 주주는 주식 1주에 대하여 1주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1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4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와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 이사회 등

제25조 (이사의 선임)

- ① 본 회사는 3인 이상 9인 이하의 이사를 두며 그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한다.
- ② 사외이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 ③ 본 회사는 지주회사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1인을 선임한다.
- ④ 본 회사는 이사 선임시 상법 제 382 조의 2 에 의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6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으며 회사, 지주회사, 자회사등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할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 ② 이사의 임기가 그 임기 중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제27조 (이사의 보선)

이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사의 결원이 생겨도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28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법률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회사를 대표한다.
-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③ 본 회사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이사 아닌 경영진을 선임할 수 있다.
- ④ 대표이사 외의 경영진은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결의로 선임하며, 경영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단,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및 상무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추천 없이 이사회에서 결의로 선임한다.
- ⑤ 대표이사의 결원 또는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제30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제31조 (이사회)

이사회는 본 정관에 의거, 기구와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제32조 (이사회내 위원회)

- ① 본 회사는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1. 감사위원회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 ② 각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내 결의로 정한다.
- ③ 이사회내 위원회에 대하여는 각 위원회에서 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며 제 33 조 제 2 항 내지 제 3 항, 제 34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이사회내 의장)

- ① 이사회 의장은 매년 이사회 결의로써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 의장 이외에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의 결원 또는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 (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적어도 7 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 전원의 동기가 있을 때에는 제 2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35조 (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경업금지) 및 제 397 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제 398 조(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및 제 415 조 2(감사위원회)의 ③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 8.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

제36조 (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 기재할 사항은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③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

제37조 (이사회 권한위임)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쇄에 관한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제38조 (감사위원회)

- ① 본 회사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둔다. 단,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인 되도록 한다
- ②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⑤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 (준법감시인)

본 회사는 이사회 의결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 6의 제④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선임하도록 한다.

제6장 계산

제40조 (사업년도)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1조 (재무제표의 작성·비치)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 현금흐름표
6. 주식

- ②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2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사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 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43 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본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 1 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4조 (중간배당)

-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 462 조의 3 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 ②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준비금
- ③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 1 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5조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전항의 시효가 완성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 (적용법규)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2조 (사규)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회의 결의로써 경영상 필요한 사규를 정할 수 있다.

제3조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엘지신용카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5조 제3항은 이 정관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 즉시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종전의 정관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34조 제1항, 제34조 제4항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3월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3월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11월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12월27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지배구조 내부규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범은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의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 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법상 회사”란 「상법」 제169조의 회사(「상법」 규정을 준용하는 특별법에 의한 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 가. 「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이하 “은행”이라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3.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 집행책임자를 말한다.
4.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5. “사외이사”란「상법」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를 말한다.
6. “최고경영자”란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역할과 지위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7. “이사회등”이란 상법 제390조에 따른 이사회 및 같은 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를 말한다.
8. “경영진”이란 임원중에서 사외이사과 비상임이사, 상근감사위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9.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란 금융회사의 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보수위원회가 심의의결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10.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부행장보·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성과보수”란 성과에 연동(連動)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를 의미한다.
12.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란 회사가 제47조에 따라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 및 지배구조 운영 등에 관하여 매년 작성하여 공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13.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란 회사가 제47조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의 보수지급 에 관하여 매년 작성하여 공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14. “준법감시인”이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 2 장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제1절 이사회

제3조(이사의 구성)

- ① 다양한 분야에서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절한 경험이나 지식 및 신한금융그룹의 창업 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신한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가진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전문성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 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편중되지 않게 구성되도록 노력한다.

- ② 이사회는 3인 이상 9인 이내의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 ③ 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 에서 정한 인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해당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이사회 권한 및 책임)

-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 1.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정관 등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사항
 - 5.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
 - 6.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 이해상충 행위의 감독에 관한사항
 - 7. 회사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8. 회사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분기별 경영실적 현황
 - 2. 분기별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 현황, 지침 준수 현황
 - 3. 사업연도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4. 다른 규정에서 정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 5. 기타 대표이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이사회는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5조(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인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다.

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 회사로부터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제6조 (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임시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 ②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8조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

이사회는 연1회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이사회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운영에 참고하며,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절 이사회내위원회

제9조(이사회내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내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1. 감사위원회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② 이사회내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③ 이사회내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

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회내위원회는 연1회 해당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며,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0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이하 이 조에서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한다.

② 감사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의 수가 제1항에 따른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에 따른 구성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한다.

③ 감사위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외부감사인 선정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제11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외이사,대표이사,감사위원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2.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대표이사,감사위원 후보 추천
3.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2항 제3호의 후보군 관리 내역을 연 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이 스스로를 추천하지 못하며,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이사회등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2조(위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 ① 위험관리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②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2. 회사가 부담 가능한 리스크수준의 결정
 - 3.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 4. 리스크관리규정과 리스크협의회규정의 제정 및 개정
 - 5.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6. 리스크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7.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8. 금융감독원의 비소매 및 소매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그룹 내부등급법 승인 관련 의사결정 사항
 - 9. 그 밖에 이사회 및 위험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보수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 ① 보수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② 보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험관리위원회 소속 이사를 1인 이상 참여하게 하여 보수체계에 위험 관리측면이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③ 보수위원회는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 1.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 2.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에 대한 평가 및 보수체계, 평가 및 보수안의 확정에 관한 사항

3.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수 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회사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결정
6. 보수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보수 체계와 관련된 사항

④ 보수위원회는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이사회내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사외이사는 보수위원회 및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회내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이사회내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이사 및 최고경영자

제15조(이사의 선임 및 퇴임)

- ① 사내이사, 비상임이사,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사내이사, 사외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회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독립성 요건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로부터 금융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주주총회는 이사가 이사로서 신분을 유지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임할 수 있으며, 이사는 사임, 임기만료,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등의 사유에 의하여 퇴임한다.

제16조(이사의 자격요건)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 ② 사외이사는 그 재임기간 동안 2개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로 선임될 수 없다.
- ③ 사내이사의 자격요건은 본 규범 제51조를 따른다.
- ④ 비상임이사는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제17조(이사후보 추천절차)

- ① 이사후보를 추천하는 이사회내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 ② 이사후보를 추천하는 이사회내위원회는 이사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이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시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서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한다.

제18조(사외이사 후보추천 내역의 공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통지에 같음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일을,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안내한다.

1. 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약력
3. 사외이사 후보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
4. 사외이사 후보자와 회사 및 자회사등(그 임원 및 대주주 포함)과의 관계
5. 관련법령 및 제16조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6.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7.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8. 그 밖에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9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정하며, 연임될 수 있다.

1. 사외이사 : 2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
2. 사내이사 및 비상임이사 : 3년 이내

②제1항의 임기는 그 임기 중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③이사가 재임하기 위해서는 이사 재임기간 동안의 제24조에 의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사외이사는 6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으며 회사 또는 자회사등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할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 중의 해당년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재임함에 따라 재임기간이 해당년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사외이사의 역할)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1조(이사의 자료요청권 등)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이사의 책임)

- ① 이사는 이사회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등이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한다.
- ② 이사는 제1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이사회등에의 참여에 할애한다.
- ③ 이사는 재임기간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 ⑤ 회사는 매년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하여 이사 재임시의 활동에 대해 퇴직 후에도 통상적인 책임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⑥ 회사가 제5항에 따라 가입·갱신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사외이사 자기부담액을 최대 한도 1억원 이내에서 배상책임액의 20% 이상으로 설정한다.
- ⑦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이 수탁자·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자·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등”이라 한다)이 회사(자회사 등 회사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기부금(이에 준하는 혜택을 포함하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기 이전에 회사가 회원·사원 등으로 참여한 비영리법인등의 정관 등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기부금·출연금 등은 제외한다. 이 항에서 “기부금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해당 사외이사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소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1. 사외이사가 회사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된 경우 선임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할 것
 2. 사외이사가 선임된 이후 사외이사등이 비영리법인등의 수탁자·임직원이 되는 경우 수탁자·임직원이 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할 것

제23조(이사에 대한 평가)

- ① 회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다.
- ② 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제1항에 따른 평가 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공시한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한다.
- ④ 사내이사에 대한 평가는 본 규범 제56조를 따른다.
- ⑤ 비상임이사에 대한 평가는 사외이사의 평가를 따른다. 다만, 겸직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이사의 보수)

- ① 이사회는 사외이사의 이사회내위원회 참여도 등 활동실적에 상응한 보수체계를 수립한다.
- ② 사외이사의 보수는 기본수당, 직책수당, 회의 수당, 참가 수당 등으로 구성하며,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사내이사의 보수는 본 규범 제58조를 따른다.
- ④ 비상임이사의 보수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따른다. 다만, 겸직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운영)

- ① 회사는 사외이사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사외이사 지원부서를 운영한다.
- ② 이사회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제5조 제3항에 따른 선임사외이사의 업무 지원
 2. 제11조 제2항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업무지원
 3.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지원
 4.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검증 업무 지원
 5.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 ③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제2항제2호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 ① 회사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와 자회사등의 업무집행상황 등 경영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한다.
- ② 이사가 경영정보의 보고 또는 제공을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 ③ 회사는 이사회등의 회의자료를 회의일 2주일 전까지 발송하여 해당 이사회등에 참여하는 사외이사가 회의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한다.

제27조(이사에 대한 자문용역의 제공)

회사는 이사가 이사회등의 활동을 위해 외부기관의 법률·회계·경영 관련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한다.

제28조(이사에 대한 교육)

- ① 회사는 신임 이사에 대하여 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보고 등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대신할 수 있다.
 - 1.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중에서 선임된 경우
 - 2. 다른 금융기관의 재직 경력 등으로 업무 전문성을 인정받아 선임된 경우
- ② 회사는 이사를 위한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한다.

제2절 최고경영자

제29조(최고경영자의 자격 및 추천절차)

- ①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 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최고 경영자로 선임한다.

-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하여 관계법규와 전항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 ③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 활용방법에 관한 사항은 지주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최고경영자를 추천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 1. 최고경영자후보추천절차 개요
-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 3. 최고경영자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 4.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1조(책임경영체제 확립)

- ① 회사는 경영진의 임기를 상당 기간으로 하고 경영진(등기 임원 제외)의 선임과 해임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거나 이사회에 보고를 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의 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한다.
- ② 회사는 능력에 근거한 경영진의 선임, 역할의 명확화, 필요한 권한의 위임 등을 통하여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경영진의 임면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해임 및 퇴임사유 등을 명문화 한다.

제4장 감사위원회

제32조(기본원칙)

-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는

다.

- ② 감사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한다.

제33조(감사위원회의 권한 등)

-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 1. 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제공 요구
 -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 3. 참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 5. 그 밖에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② 경영진은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34조(감사보조조직)

- ① 감사위원회에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조직을 둔다.
- ② 감사보조조직은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한다.
- ③ 회사는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적절한 인력으로 감사보조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상근감사위원 등)

-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상근감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상근감사위원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감사 등의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1.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 따른 일상감사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3. 감사실시 등 내부감사부서 업무 통할
4.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제5장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제36조(기본원칙)

- ① 보수위원회는 회사의 보수관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보수체계가 리스크 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보수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과도한 성과보수 지급으로 회사의 자본적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③ 회사는 건전한 성과주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임직원의 보수제도를 설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제37조(보수위원회 활동의 서류 보존)

회사는 보수위원회의 설치·운영 내역과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부서의 관리·감시활동내역을 서류로 보존한다.

제38조(보수와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 ① 회사는 풍부한 경험과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가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담당자로 채용·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② 회사는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부서가 회사의 보수관련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하고,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업무가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시 대상이 되는 분야의 성과와는 독립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39조(성과보수의 원칙, 설계 및 조정)

- ①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보수 중 성과보수 비율은 성과평가와 연동하고, 그 비율은 책임의 정도, 직무의 특성, 담당 업무의 투자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따라 달리한다.
- ②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수의 상당부분을 성과보수로 하고,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한 성과에 따라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 회사는 재무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경영진(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40조 내지 제42조에서 같다),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보수 규모가 조정될 수 있도록 보수제도를 설계한다.

제40조(이연지급)

- ①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수는 담당 업무의 투자성 정도, 투자성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3년 이상 이연지급한다. 다만, 투자성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성의 존속기간 수준으로 이연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단기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 고용계약에 따라 담당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는 직원에 대해 성과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한다.
 - 1. 대출, 지급보증 및 어음의 할인/인수, 팩토링 업무
 - 2. 보험상품 개발 및 보험계약 인수에 관한 업무
 - 3. 매출채권의 양수 및 신용카드의 발행 업무
 - 4. 그 밖에 단기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 등
- ④ 이연지급시 이연기간 중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 배분한 수준보다 작도록 한다.
- ⑤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하여 재산정한다.

제41조(성과보수의 지급형태 및 방식)

- ① 회사는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보수 중 상당부분을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 등 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급한다.
- ② 회사는 주식 또는 주식연계 상품에 대하여 부여시점 이후 최소 일정 기간 동안 지급이 유보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회사는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장기보수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④ 성과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하여 정정되는 경우 기 지급된 성과보수는 정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제42조(현금보수 지급 등)

- ① 이연지급된 보수 중 주식 및 주식연계상품 등의 방식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제외한 잔여 부분은 점진적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현금보수로 지급될 수 있다.
- ② 지급확정기간 중 회사는 재무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급 미확정 부분을 재무성과나 손실규모 등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제43조(보장형 상여 및 과도한 퇴직보수의 제한)

- ① 회사는 보장형 상여를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규 임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최소의 보장형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년으로 한정한다.
- ② 회사는 과도한 퇴직 보수로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창출 및 리스크관리의 건전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제44조(개인적 리스크회피 전략 등 금지)

회사 임직원들은 보수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개인적 리스크회피 전략 또는 보수 관련 보험을 활용해서는 안된다.

제45조(성과평가 지표)

- ① 회사는 단기적인 외형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장기 성과와 수익성, 건전성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를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경영진의 성과평가 지표를 설정하며,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평가가 관대해지지 않도록 한다.
 1. 외형 및 자산 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건전성 및 수익성 관련 지표를 반영
 2. 수익성 지표를 사용할 경우 비경상적인 요인들은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위험을 감안한 수익성 지표를 반영
 3. 재무적 지표 이외에 비재무적 지표로서 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지표를 반영
 4. 회사의 성과를 장기간에 걸쳐 측정·평가하고 장기성과의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연지급 변동보수 제도를 활용
 5. 내부목표 달성 외에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금융회사간 비교 가능한 성과지표를 반영

제6장 공시

제46조(정기공시)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작성한다.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회사가 속한 관련 협회 등의 장이 정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 기준에 따른다.
 1.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지배구조 내부규범, 윤리강령 등) 및 지배구조 현황
 2.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등에 관한 다음의 각 목의 사항
 - 가.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등의 역할, 책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 나.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 다.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부의장이 있는 경우 부의장, 선임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선임사외이사, 그 밖의 구성원 명단 및 경력
 - 라.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회의개최 횟수 및 이사들의 개인별 참석 현황
 - 마. 최고경영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이유
 3.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

-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명단 및 약력
- 다.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요건, 후보추천 절차, 사외이사 업무수행 평가방식 등 사외이사 선임기준
- 라. 사외이사 후보자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
- 마. 법에 따른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 바. 사외이사 후보와 회사 및 자회사등(그 임원 및 대주주 포함)과의 관계
- 사.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및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 아.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후보군 추천과 관련하여 보고한 내용
- 카. 이사회사무국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 타. 그 밖의 이사회가 정한 사외이사후보추천 관련 사항

4. 사외이사의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의 회의일시, 보고안건을 포함한 안건내용,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위원회 참석 및 찬성 여부
- 나.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현황
- 다. 사외이사에 대하여 제공한 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실시 현황
- 라. 관련 법령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
- 마.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이 호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이 수탁자
 -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자·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 등의 제공내역
- 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근거로 한 평가 개요 및 평가 결과
- 사. 사외이사 지원부서 지정 및 운용현황
- 아. 사외이사 개인별 재직기간
- 자.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총액 및 내역
- 차.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 카. 회사와 사외이사등 소속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 타.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 나. 회사 최고경영자후보 추천절차 개요
- 다.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 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가 진행된 경우 내역
-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내역
- 바. 이사회 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 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현황

6. 감사위원후보추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
-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명단 및 약력
- 다. 감사위원후보의 자격요건, 후보추천 절차, 감사위원 업무수행 평가방식 등 감사위원

선임기준

- 라. 감사위원 후보자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
- 마. 법령에 따른 감사위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 바. 그 밖의 이사회가 정한 감사위원후보추천 관련 사항

7.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사항

- 가. 보수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을 포함한 회사의 보수체계 의사결정 절차
- 나. 성과측정 및 위험 조정 기준,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 이연, 지급확정 및 환수기준, 현금과 주식, 그 밖에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등을 포함한 보수체계의 주요 특성

- 8. 위험관리위원회 활동 내역
- 9. 지배구조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권고·지시한 사항 및 회사의 개선 내용 또는 계획
- 10.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작성한다.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작성 기준에 따른다.

1. 보수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책임을 포함한 회사의 보수체계 의사결정 절차
2. 성과측정 및 위험 조정 기준,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 이연, 지급확정 및 환수기준, 현금과 주식, 그 밖에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등을 포함한 보수 체계의 주요 특성
3. 회계연도 중 보수액(기본급 및 성과보수를 구분하고 대상 임직원수를 포함한다)
4. 성과보수 금액 및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및 기타로 구분한다)
5. 이연된 성과보수(지급이 확정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한다)
6. 이연된 성과보수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
7. 회계연도중 지급된 퇴직 관련 보수금액, 해당 임직원 수 및 1인기준 최고 지급액
8. 회계연도중 임직원에게 지급된 보수금액, 직급별 보수액 및 성과보수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등이 직전년도에 발생한 변동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년도 변동보수는 이를 결의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한다.

③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는 익년도 정기 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해당 회사 및 관련 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등이 직전년도에 발생한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보수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년도 변동보수는 이를 결의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한다.

④ 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동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47조(수시공시)

- ① 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 포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 ② 회사는 제14조의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시한다.
- ③ 회사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경우 회의일시, 보고안건을 포함한 안건내용, 사외이사의 참석 및 찬성 여부 등을 익월 15일까지 공시한다. 다만, 익월에 공시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어려운 경우 해당 기간 이내에 향후 공시 날짜, 지연사유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시계획을 공시한다.

제48조(주주총회)

- ① 회사는 사외이사 관련 주주총회 안건 상정 시 사외이사후보추천 등 성격이 상이한 안건들을 포괄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개별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 의장, 이사회내위원회 위원장은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들의 질의에 답변한다.
- ③ 회사는 주주총회가 종료된 후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행사 주식수, 안건별 찬·반 주식수 비율 등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제49조(공시방법)

이 규준에 따른 공시는 회사 및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제7장 경영진에 관한 사항

제1절 경영진의 자격요건

제50조 (경영진의 자격요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영진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2절 경영진의 권한과 책임

제51조(권한과 책임)

① 최고경영자는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집행하며 다음 각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1. 주주, 관련기관 등 회사의 이해관계인과의 의사교류 원활화를 위한 역할
2. 회사 업무 전반의 총괄 및 이해관계인의 조정 역할
3.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요청하는 역할

② 최고경영자 이외의 경영진은 최고경영자의 업무를 보좌하고, 소관업무 일체를 관장한다.

③ 경영진은 이사회와 이사회내의 각 위원회 및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 하여야 한다.

④ 경영진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3절 경영진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52조(경영진의 선임 및 해임)

- ① 최고경영자는 지주회사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최고경영자 외의 경영진은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단,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및 상무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추천 없이 지주회사 사전협의를 거친다.
- ③ 이사회는 자질, 업적, 역량 등을 감안하여 경영진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경영진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경영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경영진 직위에서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1. 법규, 정관, 내규, 위임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경영진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사와 경영진간에 체결된 위임계약서에서 해임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제53조(업무대행자 선임 등)

- ① 최고경영자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전략기획, 재무기획,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진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결의하는 경영진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1,2항 외의 경영진의 유고 시에는 최고경영자가 정하는 경영진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4조(임기)

최고경영자는 이사의 임기에 따르며, 최고경영자 아닌 경영진의 임기는 2년의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를 담당하는 경영진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제4절 경영진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제55조(경영진 등에 대한 교육 및 평가 활용)

- ① 회사는 경영진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하여 전략, 리더십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경영진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제도를 운영하며, 그 평가결과를 경영진 선임 시 고려한다.

제5절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제56조(경영진의 성과평가)

- ① 경영진에 대한 평가는 보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② 경영진에 대한 평가는 계량적인 평가 외에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하며, 담당업무 성과 외에 회사등 조직 단위의 업무성과와 연동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③ 경영진에 대한 평가결과는 보수의 지급이나 재선임 또는 해임시에 활용한다.

제57조(경영진의 보수)

- ① 경영진의 보수는 보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② 경영진의 보수는 연봉(기본급, 단기성과급)과 활동수당으로 하며, 보수와는 별도로 성과연동형 장기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등

제58조(내부통제체제)

- ① 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한다.

②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통제규정에서 정한다.

제59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①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두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한다.

③ 회사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⑤ 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60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원장, 그 밖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가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 (라목 후단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라목 전단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같은 조 제5호의2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과 같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준법감시인이 된 사람이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61조(리스크관리체제)

① 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한다.

②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리스크관리규정에서 정한다.

③ 회사는 리스크관리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의 리스크관리 업무 지원을 위해 리스크협의회를 설치한다.

④ 리스크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험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62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① 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한다.

②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한다.

③ 회사가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⑤ 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63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①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관련 기관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위험관리책임자가 된 사람이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64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금지 등)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회사의 본질적 업무(해당 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 회사의 경영(兼營)업무
4. 자회사등의 업무(위험관리책임자가 자회사등의 리스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
5.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65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한다.
- ③ 회사 및 임직원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한다.
- ④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였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 ① 이 규범은 2015.2.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범은 2016.8.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규범은 2017.2.22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9조 제4항의 시행일은 제31기 정기주주총회일로 한다.
- ④ 이 규범은 2018.2.21일부터 시행한다.
- ⑤ 이 규범은 2018.7.2일부터 시행한다.
- ⑥ 이 규범은 2018.11.2일부터 시행한다.
- ⑦ 이 규범은 2018.12.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등)

- ① 제19조의 규정은 이 규범 시행 후 선임(재선임과 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한다.
- ② 이 규범 시행 후 선임되는 사외이사의 제19조제3항에 따른 총 재임기간 산정과 관련해서는 이 규범 시행 전 재임한 기간에 대해서도 제19조제4항을 적용한다.
- ③ 회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임기 등을 고려하여 이 규범 시행 후 최초로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제20조에 따른 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이유와 준수계획을 주주총회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공시한다.
- ④ 이 규범 시행일 현재 사외이사로 재임 중인 자도 제23조제7항제1호와 관련해서는 이 규범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초로 선임되는 것으로 본다.

(붙임 3) 이사회 규정

이사회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경영진의 정의)

이 규정에서 '경영진'이라 함은, (i) 대표이사 사장 및 (ii) 이사가 아닌 자 중 이사회 동의를 얻어 대표이사 사장이 선임한 자로서 대표이사 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집행하는 자("이사 아닌 경영진"이라 한다)를 총칭하여 말한다.

제4조 (이사회 역할 및 권한)

- ①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를 승인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시·감독한다.
- ② 이사회는 회사 경영의 건전성확보를 위하여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한 내부통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이 규정 제13조에 열거된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④ 이 규정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 ⑤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 ⑥ 이사회는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정책을 감독하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경영진과 감사의 평가 및 조치결과를 검토 및 승인한다.

제5조 (이사의 의무 및 책임)

- ① 이사는 주주 전체의 이익보호 및 회사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법령과 정관에 따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④ 이사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6조 (구성)

이사회는 3인 이상 9인 이하의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7조 (의장)

-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 ② 의장이 부재중이거나 결원 또는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다.

④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3. 의장, 회사로부터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4.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제8조 (종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성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9조 (소집권자)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 의장의 결원, 유고 또는 부재시에는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적어도 이사회 개최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의사의 진행)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며, 특정의 이사를 지정하여 의사의 진행을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법령이나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단, 제13조 제1항 제5호 '아'목 및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최고책임자 해임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 (위임 및 결의사항 등)

- ① 이사회 결의사항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며, 관계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이사회내의 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나.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정관 및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나. 지배구조내부규범, 이사회규정, 감사위원회규정,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위험관리위원회규정, 보수위원회규

정

다. 경영진운영규정, 경영진평가 및 보수규정, 경영진퇴직위로금 규정, PU(Performance Unit)운영규정

라. 내부통제기준, 내부회계관리규정

마.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지침

3.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이사, 경영진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다. 조직·인사·급여에 관한 기본체계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라. 해산, 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과 관련된 사항

마. 자회사 등의 설립 및 청산에 관한 사항

바. 주식 및 자본금에 관한 사항

사.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등에 관한 사항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제외)

나. 이사와 본 회사간의 거래승인 및 이사의 경업승인에 관한 사항

다.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이사의 보수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라.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및 상무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마. 대표이사 사장의 '라'목 이외의 경영진 임면에 관한 사항

바.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의 재결의

사.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및 사외이사 평가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

5. 중요한 계약 등에 관한 사항

가. 1건당 200억원을 초과하는 업무용 동·부동산의 취득, 처분의 경우

나. 1건당 100억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의 체결

(단 기존계약을 갱신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직전 계약금액의 10% 범위 이내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함)

다. 1건당 자기자본(직전 회계연도 말 또는 당해 회계연도 6월말 중 최근의 자기자본 기준,
이하 같음)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본을 신규 출자하는 경우

라. 1건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용역계약 이외의 계약과 소송에 관한 사항

마. 1건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재산의 차입에 관한 사항(단, CP, Call 차입 등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차입은 제외)

바. 외국금융기관 등과의 포괄적 업무제휴, 자본의 참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제휴 또는
협약에 관한 사항

사. 사채 모집에 관한 사항

아.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 (1) 이사 또는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 주주
- (2) 제1단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3) 제1단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4) 제1단부터 제3단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 (5) 제1단부터 제3단까지의 자가 제4단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6. 리스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 가.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의 수립·변경
- 나. 위험관리위원회 부의대상 안건 중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기 타

- 가. 관계법령·감독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
- 나.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 다.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과 관련된 사항
- 라. 이사회내 위원회가 특별히 부의 하는 사항
- 마. 기타 대표이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 보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분기별 경영실적 현황
2. 분기별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 현황, 지침 준수 현황
3. 사업연도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4. 다른 규정에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5. 기타 대표이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 ① 회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다.
- ② 회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다.

제15조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

- ① 회의자료를 회의일 2주일 전까지 발송하여 이사회에 참여하는 사외이사가 회의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1. 경영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소집권자의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인사, 기타 비밀 유지가 중요한 사항의 경우
- ② 사외이사가 이사회 활동을 위해 외부기관의 법률, 회계, 경영 관련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③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

제17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 1. 감사위원회
 -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3. 위험관리위원회
 - 4. 보수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19조 (보수 등)

이사회 의사 중 경영진이 아닌 이사에 대하여 이사회내위원회 참여도 등 활동실적에 상응한 보수(수당 포함)를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비, 자료수집비 등 별도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사무국)

이사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집통지, 부의안건의 정리 및 배포,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부의안건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의 이사회 의결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제3조 (위원장)

-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 ②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소집)

-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대표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2.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3. 감사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제2호의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내역을 '연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6조 (대표이사 후보 추천)

① 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관계법규와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9조 1항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②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및 회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대표이사 후보 추천절차 개요
2.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및 회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약력
3. 대표이사 후보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
4.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대표이사 후보 추천 이유
6. 대표이사 후보의 경력

7. 기타 대표이사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7조 (사외이사 후보 추천)

- ① 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이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 ③ 사외이사가 재임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평가 결과 해당 사외이사의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검증된 자중에서 인선한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확정하여 추천한다.
- ⑤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시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 ⑥ 위원회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서에 사외이사 평가결과 및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한다.
- ⑦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약력

3. 사외이사 후보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

4. 사외이사 후보자와 회사 및 자회사등,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

5. 관련법령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6.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7.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8. 그 밖에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8조 (감사위원 후보 추천)

위원회는 감사위원 후보자가 관계법규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한다.

제9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다만,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경우 당해 위원의 의결권 수는 재적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자신이 후보가 되는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권 수는 출석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경우 당해 위원의 의결권 수는 재적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관계인의 출석)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통지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5) 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3 조 (역할)

위원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 개선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무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경영감사, IT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2.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3. 내부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4. 외부감사인 선정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7.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8. 기타 감독기관 지시 사항,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 4 조 (권한)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제증명서, 확인서, 문답서 및 기타 관계자료와 물품의 요구
2.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
3.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4. 참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5.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6.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 위원회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경영진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제 5 조 (의무)

- ① 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아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 6 조 (독립의 원칙)

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 집행기관,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구 성

제 7 조 (선임 및 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자로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호 중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1.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관련업계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2. 법학 또는 상경계열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학교, 연구소 등 학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3. 10년 이상 금융업무 관련 기관에 종사한 자로서 회계, 내부통제, 감사, 전산 등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상기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법령,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 시점까지로 한다.

제 8 조 (해임 및 총원)

① 위원의 해임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

② 위원회의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9 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기준을 준용한다.

제 10 조 (위원회의 권한위임)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 받아 수행하는 상근감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감사위원의 미착, 출장,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고 사안이 긴급한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근감사위원이 이를 대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③ 상근감사위원이 전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감사부서의 부서장이 이를 대행하고 즉시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 ④ 일상감사사항 등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근감사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은 상근감사위원이 전결처리하고 당해 기간에 전결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정기위원회에서 보고한다.
- ⑤ 일상감사대상 이외의 서류 중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상근감사위원이 공람한다.

제 3 장 회 의

제 11 조 (회의의 종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12 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13 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부의사항)

위원회의 결의사항과 심의사항은 관계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① 결의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나.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에 대한 보고 의무

나.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다.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라.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마. 임시이사회 소집청구

바.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가. 감사계획의 수립

나. 내부감사 관련 업무, 재산, 자회사의 조사

다. 내부 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라. 외부감사인의 선정 및 외부감사인의 해임 요청

마.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확인

4. 기타

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나.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 및 개폐

다.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라.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사항

1. 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기준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나.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다.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주요 자료의 검토

라. 준법감시인의 해임 건의

마.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바.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사항

사.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검토

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 받은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의 조사 및 검토

차.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 받은 회사의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조사

및 검토

카. 외부감사인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2. 기타

가.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나.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5 조 (경영정보 요구 등)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을 출석하도록 하거나 관련 자료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6 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의결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감사 및 보고

제 17 조 (감사업무의 위임)

- ① 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상근

감사위원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감사 등의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 따른 일상감사 사항
3.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감사부서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 18 조 (이사회에 대한 보고)

- ① 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사내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절한 작동여부를 평가하고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매 사업년도 마다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경영진 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이를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제 19 조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 ① 상근감사위원은 위임받은 사항 및 주요 업무수행과정에서 보고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 5 장 보칙

제 20 조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 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감사업무상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관련 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 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회사에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 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외부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사항의 이행여부 평가결과,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이 요구한 외부자문 내역, 외부감사인과의 대면회의 내역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 21 조 (감사보조조직)

- ① 위원회에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조직을 둔다.
- ② 감사보조조직은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한다.
- ③ 회사는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적절한 인력으로 감사보조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 (감사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23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2항 및 제9조는 회사의 상장 폐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6)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역할)

위원회는 회사경영상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의 인식, 측정, 통제 등 리스크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감시한다.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가. 위험관리위원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금융,경제,경영,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나.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 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위험관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라. 위험관리위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 ④ 위원장은 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
- ⑤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
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험관리책임자(CRO)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 진행 지원 및 위험관리 위원의 질문에
대한 응답 등을 담당한다.
-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소집)

- ① 정기 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
다.

제5조(위원회의 업무)

-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1.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사가 부담 가능한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변경에 관한 사항
3. 리스크 유형별 허용한도의 설정 및 허용한도 초과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
4.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현지법인 관련 자본금 출자 및 증자, 기업 인수합병, 기타 이사회 결의 대상인 지분참여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련 사항
6. 그룹의 위험가중자산, BIS비율 산출을 위해 금융감독원 승인이 필요한 소매 신용평가시스템에 관한 사항
7.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8.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9. 리스크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단, 주요 변경사항 중 위험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한함)
10.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아 이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각종 리스크측정 및 모니터링 결과
2. 자산건전성분류 기준 및 현황과 대손충당금적립 기준 및 현황
3. 리스크관리협의회가 결의한 중요사항 및 실행결과
4. 위험관리위원회의 지시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선이행 및 추진)

제5조의 결의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 사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결의 없이 이를 선이행(先履行)할 수 있다. 그러나 사후에 위원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보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주요업무사항 및 성과를 정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경영진,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를 본점에

비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7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7) 보수위원회 규정

보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며 경영진 등의 평가보상체계가 건전하게 수립, 운용되도록 관리한다.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2인 이상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 ② 위원 중 1인 이상은 위험관리위원회 소속 이사로 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조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또는 상법상의 회사(지배구조내부규범 제2조의 상법상의 회사를 말한다)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 ③ 사외이사인 위원은 연속해서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시 위원회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위원장)

-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 ② 위원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소집)

-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결의사항 등)

- ①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지주회사 보수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영진에 대한 평가 및 보상안의 확정
 2. 지주회사 보수위원회가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3. 지주회사 보수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조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동일)에 대한 성과보상체계 결정에 관한 사항
 4.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에 대한 평가 및 보수체계, 평가 및 보수안의 확정에 관한 사항
 5.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평가 및 보상안의 심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보상체계 연차보고서(지배구조내부규범 제2조의 보상체계 연차보고서를 말한다)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7.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보상 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보상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10. 회사의 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11.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8조(관계인의 출석, 관계자료 제출 및 외부자문)

-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의 계약 체결 및 해지는 전적으로 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제9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 ① 이 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에 따른 보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은 이 규정 제정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된 최초의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 2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8.1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2.22부터 시행한다.

제 4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2.21부터 시행한다.

<별첨>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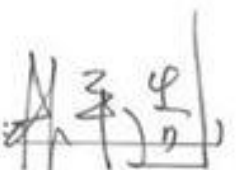
선임대상 사외이사 후보 검토 보고서

성 명	종합 의견
박 평 조	적 합
성 재 호	적 합
이 성 한	적 합
김 성 렬	적 합

본 위원회는 상기 선임대상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2018년 2월 21일

신한카드 주식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박 평 조 (署名 )

후보자	박 평 조	소속법인	미마츠 기업
-----	-------	------	--------

※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 및 모범규준 준수 여부

상법 제302조 제3항 - 주식회사사외이사 자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상법 제422조의8 제2항 - 상장회사사외이사 자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지주회사법 제33조 제1항, 제2항 - 금융지주회사임원의 자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제4항 - 금융지주회사사외이사 자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16조 제1항 -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16조 제2항 - 사외이사 자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자격요건 주요 항목

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해당여부	비 고
회사 또는 자회사 등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임원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극적 자격요건 (주요 사항)	해당여부	비 고
소속 법인 자본의 10% 초과여신거래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속법인 및 본인자문거래 및 용역거래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2개 이상 다른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 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다른 회사(자회사 등 제외)의 사외이사로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여부	비 고
전문성	충족	- 경영전문가 (미마츠기업(일본) 사장)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충족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평가결과	전문성(5등급), 직무공정성(5), 윤리책임성(5), 충실성(5)
------------------	--------------------------------------

※ 평가 등급 : 5등급(4.5~5.0) - 매우 우수 / 4등급(3.5~4.5) - 우수 / 3등급(2.5~3.5) - 보통 / 2등급(1.5~2.5) - 부진 / 1등급(0~1.5) - 매우부진

후보자	성 재 호	소속법인	성균관대학교
-----	-------	------	--------

※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 및 모범규준 준수 여부

상법 제382조 제2항 - 주식회사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 상정회사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지주회사법 제88조 제1항, 제2항 - 금융지주회사임원의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제4항 - 금융지주회사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6조 제1항 -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6조 제2항 -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자격요건 주요 항목

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해당여부	비 고
회사 또는 자회사 등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임원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극적 자격요건 (주요 사항)	해당여부	비 고
소속 법인 자본의 10% 초과여신거래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속 법인 및 본인 자문거래 및 용역거래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2개 이상 다른 상정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다른 회사(자회사 등 제외)의 사외이사로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여부	비 고
전문성	충족	- 법률 전문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충족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평가결과	전문성(5등급), 직무공정성(5), 윤리책임성(5), 충실성(5)
------------------	--------------------------------------

※ 평가 등급 : 5등급(4.5~5.0) - 매우 우수 / 4등급(3.5~4.5) - 우수 / 3등급(2.5~3.5) - 보통 / 2등급(1.5~2.5) - 부진 / 1등급(0~1.5) - 매우부진

후보자	이 성 한	소속법인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	------	---------------------

※ 사외이사자격요건에 대한 법령 등 준수 여부

상법제542조의8제2항-상장회사사외이사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 관한법률」제5조-임원의자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 관한법률」제6조-사외이사의자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당사정관제30조-사외이사의자격요건-적극적자격요건	충족

※ 사외이사자격요건 주요 항목

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해당여부	비 고
회사 또는 자회사등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임원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극적 자격요건(주요 사항)	해당여부	비 고
금고 이상의 실형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임직원 제재조치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여부	비 고
전문성	충족	- 경제, 금융 전문가 (기획재정부 본부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충족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평가결과	전문성(5등급), 직무공정성(5), 윤리책임성(5), 충실성(5)
------------------	--------------------------------------

※ 평가 등급 : 5등급(4.5~5.0) - 매우 우수 / 4등급(3.5~4.5) - 우수 / 3등급(2.5~3.5) - 보통 / 2등급(1.5~2.5) - 부진 / 1등급(0~1.5) - 매우부진

후보자	김성렬	소속법인	영남대학교 (초빙교수)
-----	-----	------	-----------------

※ 사외이사자격요건에 대한 법령 등 준수 여부

상법제542조의8제2항-상장회사사외이사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5조-임원의자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6조-사외이사의자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당사정관제30조-사외이사의자격요건-적극적자격요건	충족

※ 사외이사자격요건 주요 항목

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해당여부	비 고
회사 또는 자회사등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임원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극적 자격요건 (주요 사항)	해당여부	비 고
금고 이상의 실형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임직원 제재조치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여부	비 고
전문성	충족	- 경영 전문가 (행정자치부 차관, 경기도 행정1부지사)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충족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평가결과	
------------------	--